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11. 14.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 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번호
목적	1~3
목적의 달성	2~3
적용	한3.1
적용범위	4
지배력	5~18
힘	10~14
이익	15~16
힘과 이익의 연관	17~18
회계처리규정	19~26
비지배지분	22~24
지배력의 상실	25~26
투자기업 여부 결정	27~30
투자기업: 연결 예외	31~33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B1~B101
지배력의 평가	B2~B85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B5~B8
힘	B9~B54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B55~B57
힘과 이익과의 연관	B58~B72

목 차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B73~B75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B76~B79 계속적 평가 B80~B85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B85A~B85W 사업의 목적 B85B~B85E 출구전략 B85F~B85H 투자이익 B85I~B85] 공정가치 측정 B85K~B85M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85N 둘 이상의 투자자산 B850~B85P 둘 이상의 투자자 B850~B85S 특수 관계에 있지 않는 투자자들 B85T~B85U 소유지분 B85V~B85W 회계처리 규정 B86~B99 연결 절차 **B86** 동일한 회계정책 B87 측정 B88 잠재적 의결권 B89~B91 보고기간 종료일 B92~B93 비지배지분 B94~B96 지배력의 상실 B97~B99 투자기업 지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B100~B101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5)

[결론도출근거]

IFRS 10의 결론도출근거 (BC1-BC317)

IFRS 10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이하 '이 기준서')는 문단 1부터 33까지와 부록 A부터 C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굵은 기울임글자꼴*로 적고 그 다음에는 일반글자꼴로 적는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침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작성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의 달성

- 2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을 규정한다.
 - (1)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의 근거로서 지배력을 규정한다.
 - (3)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 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배력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 한다.
 - (4)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 (5)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를 정한다.
- 3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적용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4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나)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I)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 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 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라)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4A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 직급여제도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하지 않는다.

4B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이 기준서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 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지배력

- 5 투자자는, 기업(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과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한다.
-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7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 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 8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문단 B80~B85 참조).
- 9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각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9호 '금융상품'과 같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한다.

힘

- 10 투자자가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 11 힘은 권리에서 생긴다. 때로 힘을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은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에 의해 부여된 의결권만으로 직접 획득되고, 그러한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지배력 평가가 좀 더 복잡할 것이며 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힘이 하나 이상의 계약상 약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 12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지시하는 권 리를 행사하기 전일지라도 힘을 가진다.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 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투자자가 힘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피투 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할 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 13 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14 다른 기업들이 관련 활동의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예: 유의적인 영향력)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으며(문단 B26~B28 참조),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

- 15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 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 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 한 투자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비 지배지분 소유주들은 피투자자의 이익이나 분배의 몫을 가질 수 있다.

힘과 이익의 연관

- 17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18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B58~B72에 따라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처리 규정

- 19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 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때에 중지된다.
- 21 문단 B86~B93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비지배지분

- 22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 23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 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 24 문단 B94~B96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지배력의 상실

-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 (2)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 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

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 (3)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 26 문단 B97~B99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투자기업 여부 결정

- 27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 (2)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하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 28 문단 27에서 기술한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에 다음 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 (1)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문단 B85O~B85P 참조).
 - (2)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문단 B85Q~B85S 참조).
 - (3) 투자자는 그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문단 B85T~B85U 참조).
 - (4)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 형태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문단 B85V~B85W 참조).
 -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더라도 투자기업 분류에서 반드

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갖지 않는 투자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A에서 요구하는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

29 문단 27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하나 이상이 달라지거나, 문단 28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다시 평가한다.

30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이 되거나 더 이상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지 위가 달라진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지위 변동을 회계처리 한다(문단 B100~B101 참조).

투자기업: 연결 예외

31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2 문단 31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 (문단 B85C~B85E 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인 경우, 그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9~26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한다.

¹⁾ 문단 C7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33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 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 업을 연결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관련 활동 이 기준서의 목적상, 관련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

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말하다.

방어권 당사자에게 방어권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힘을

갖게 하지는 않지만 방어권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권리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

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의사결정자 본인으로서나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

정권이 있는 기업

종속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투자기업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2)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

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력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 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

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

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해임권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권

리

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

존 권리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2011년 개정),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규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 관계기업
- 타 기업에 대한 지분
- 공동기업
- 주요 경영진
- 특수관계자
- 유의적인 영향력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에서는 문단 1~33의 적용에 관해 기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

B1 이 부록의 사례들은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부록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특정 실제 사례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배력의 평가

- B2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 (3) 투자자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 B3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1)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문단 B5~B8 참조)
 - (2)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와 그러한 관련 활동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문단 B11~B13 참조)
 - (3) 투자자의 권리로 인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가 갖게 되는지(문단 B14~B54 참조)
 - (4)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문단 B55~B57 참조)
 - (5)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

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지(문단 B58~B72 참조)

B4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다른 상대방과 관계에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문단 B73~B75 참조).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B5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관련 활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관련 활동에서 이익을 얻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B6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피투자자의 보통주와 같이 보유자에게 비례 의결권을 제공하는 지분상품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은 명백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결정을 바꾸는 추가 약정이 없다면, 지배력을 평가할 때 누가 피투자자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하는 충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문단 B34~B50 참조). 가장 단순한 경우, 다른 요소가 없다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B7 좀 더 복잡한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B3의 다른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B8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련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으로 지시되는 경우와 같이, 누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 가장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피투자자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피투자자에게 노출되도록 설계된 위험, 피투자자와 관련

된 당사자들에게 전가되도록 설계된 위험,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일부나 전부에 투자자가 노출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하방위험뿐만 아니라 상방위험의 가능성도 포함한다.

힊

- B9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힘을 평가하는 목적상, 실질적인 권리와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려해야 한다(문단 B22~B28 참조).
- B10 투자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련 활동,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들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활동과 관련 활동 지시

- B11 다양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은 많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황에 따라 관련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고,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구매
 - (2) 존속 기간의 금융자산 관리(채무불이행 된 때를 포함)
 - (3) 자산의 선택, 취득, 처분
 - (4)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연구와 개발
 - (5)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funding structure)의 결정이나 자금의 조달
- B12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예산을 포함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영업의사결정과 자본의사결 정을 수립
- (2)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나 용역 제공자를 임명하고 보상하며, 그들의 용역 제공이나 고용을 중지

B13 경우에 따라, 일련의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 발생 전후의 활동은 관련 활동일 수 있다. 둘 이상의 투자자들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활동이 다른 시점에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동시에 발생하는 의사결정권의 처리와 일관되게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투자자를 결정한다(문단 13 참조). 투자자는 관련 사실이나 상황이 변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평가를 다시 고려한다.

적용 사례

사례 1

두 투자자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투자자를 설립하였다. 한 투자자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포함한다. 규제기관이 의약품을 승인하면, 다른 투자자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이다. 이 투자자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활동에 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개발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는 활동이 모두 관련 활동일 경우, 각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투자자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활동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고등 개발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활동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힘을 갖는 투자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 (1)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 (2) 의약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피투자자의 이윤, 수익, 가치
- (3) (2)의 요소에 대하여 각 투자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 (4) 이익 변동에 투자자가 노출되는 정도
- 이러한 특정 사례에서 투자자는 다음 사항도 고려할 것이다.
- (5) 규제기관에서 받는 승인의 불확실성과 이를 해결하는 노력 (성 공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투자자 의 실적 고려)
- (6) 개발 단계가 성공하면 의약품을 통제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사례 2

투자기구(피투자자)는 투자자(채무상품 투자자)가 보유하는 채무상품과 다수의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는 지분상품으로 설립되고 재원이 조달된다. 지분트랜치(equity tranche)는 최초 손실을 부담하고 피투자자의 잔여이익을 받도록 고안되어 있다. 지분의 30%를보유한 지분 투자자는 자산 관리자이기도 하다. 피투자자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매입하는 데 조달된 재원을 사용하며, 그 결과금융자산의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이 거래는 포트폴리오 자산의 지급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최소로 노출되는 투자자산으로 채무상품투자자에게 판매되는데, 이는 이러한 자산의 성격 때문이며 지분트랜치가 피투자자의 최초 손실을 부담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피투자자의 이익은 포트폴리오 지침에 따른 자산의 선정, 취득, 처분의 결정과 포트폴리오 자산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리의결정을 포함하는 피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지급불이행이 포트폴리오 가

치의 특정 비율에 도달할 때(즉,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피투자자의 지분트랜치가 소진된 것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자산관리자가 관리한다. 그때부터는 제삼자인 수탁자가 채무상품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한다. 피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련 활동이다. 자산관리자는 지급불이행 자산이 포트폴리오 가치의 특정 비율에 이르기 전까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으며, 채무상품 투자자는 지급불이행자산의 가치가 포트폴리오 가치의 특정 비율을 초과할 때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다. 자산관리자와 채무상품 투자자는 각자의 이익 변동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지시할 수 있는지 각각 결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 권리

- B14 힘은 권리에서 발생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는 피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 B15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투자자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 형태의 권리 (문 단 B34~B50 참조)
 - (2)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해임할 권리
 - (3)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리
 - (4)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 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하는 권리

(5)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권리의 보유자가 갖게 하는 그 밖의 권리(예: 경영관리계약에 규정된 의사결정권)

B16 일반적으로, 피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권리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약정과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할 것이다.

B17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련되어 있고 계약의 약정으로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의결권으로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약의 약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문단 B5~B8 참조), 문단 B18~B20과 문단 B51~B54의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B18 어떤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권리가 피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갖게된 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고,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고려 사항과 함께 투자자의 권리와 문단 B19와 B20의 지표를 고려할 경우, 투자자의 권리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기에충분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자는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2) 투자자는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도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유의 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 에 지시할 수 있다.
- (3)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임 절차를 지배할 수 있거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위임장 획득 을 장악할 수 있다.
- (4)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관계자이다(예: 피투 자자의 대표이사와 투자자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
- (5)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자자의 특수관 계자이다.
- B19 때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정후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개별적인 지표의 존재나 지표들의 특정한 결합이 반드시 힘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투자자에 대해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다른 관련된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현재의 힘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힘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에 투자자의 임직원이었다.
 - (2) 피투자자의 영업이 다음의 상황과 같이 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 (가) 피투자자는 영업의 유의적인 부분의 자금 조달을 투자자에 게 의존한다.
 - (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부채의 유의적인 부분을 지급보증한다.
 - (다) 피투자자는 중대한 용역, 기술, 공급품, 원재료를 투자자에 게 의존한다.

- (라) 투자자는 라이선스나 등록상표와 같이 피투자자의 영업에 중대한 자산을 지배한다.
- (마) 투자자의 임직원이 피투자자의 영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와 같이, 피투자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해 투자자에게 의존한다.
- (3) 피투자자 활동의 유의적인 부분이 투자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된다.
- (4)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이익에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의 의결권이나 그 밖의 비슷한 권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 이익의 과반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이에 노출되지만,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과반 미만으로 보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B20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이익 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이익을 변동하게 하는 더 많은 권리가 있을수록, 힘을 갖기에 충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유인은 더욱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이익 변동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투자자가 힘을 갖고있다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노출 정도만으로, 투자자가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
- B21 문단 B18에서 기술한 요소와 문단 B19와 B20에서 기술한 지표를 투자자의 권리와 함께 고려할 때, 문단 B18에서 기술한 힘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권리

B22 투자자는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투자자와 그 밖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만을 고려한다. 권리가 실질적이려면, 보유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실제 능력을 가져야 한다.

- B23 실질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결정을 할 때 고려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보유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경제적 또는 그 밖의)의 존재 여부. 그러한 장애물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가)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재무적 불 이익과 유인책
 - (L)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재무적 장 애물이 되는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
 - (I)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 조건. 예를 들면 권리 의 행사시기를 촉박하게 한정하는 조건
 - (라) 피투자자의 설립 문서나 적용할 수 있는 법규에서, 보유자에 게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 (m) 권리 보유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의 무능력
 - (ii)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운영상 장애물이나 유인책(예: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러한용역을 제공하면서 현 경영진이 갖고 있는 다른 지분을 취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 다른 경영진의 부재)
 - (새)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예: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금지된 경우)
 - (2)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둘 이상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나 둘 이상 당사자가 권리를 갖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집합적으로 행사할 실질적 능력을 그들에게 제 공하는 제도의 존재 여부.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는 지표이다. 권리를 행사할 때 동의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일 가능성은 적어진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이 의사결정자에 대

해 독립적인 경우에, 이사회는 권리를 행사할 때 집합적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독립적인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해임권은 많은 투 자자가 같은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보다 실 질적일 가능성이 높다.

- (3) 권리를 갖는 당사자(들)가 권리를 행사하여 효익을 얻을지 여부. 예를 들면, 피투자자의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자(문단 B47~B50 참조)는 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한다.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다른 이유(예: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실현)로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다.
- B24 실질적이 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실질적이 되기 위하여 권리는 현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권리를 현재 행사할 수 없더라도 실질적일 수 있다.

적용 사례

사례 3

피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한다. 다음 정기주주총회는 8개월 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의결권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관련 활동의 기존 방침을 바꾸기 위해 특별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에게 특별주주총회 개최를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관련 활동의 방침은 특별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바꿀 수 있다. 이는 유의적인 투자의 실행이나 처분뿐만 아니라 자산의 중요한 판매 승인을 포함한다.

위의 상황을 아래 기술된 사례 3A~3D에 적용한다. 각 사례는 서로 독립적이다.

사례 3A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의결권은 실질적이다.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30일이 걸린다는 사실이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례 3B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 당사자이다. 선도계약 결제일은 25일 후이다. 특별총회는 적어도 30일 이내(선도계약이 결제되었을 시점)에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관련 활동의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위 사례 3A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자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즉, 선도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다). 투자자의 선도계약은 그 계약이 결제되기 전이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갖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이다.

사례 3C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실질적인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옵션은 25일 후에 행사할 수 있으며 깊은 내가 격 상태에 있다. 이는 사례 3B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사례 3D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의 당사자이며, 피투자자와 관련된 다른 권리는 없다. 선도계약의 결제일은

6개월 후이다. 위의 사례들과는 달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없다. 기존 주주들은 선도계약이 결제되기 전에 관련 활동의 기존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B25 다른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실질적인 권리는 보유자가 결정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비록 그 권리가 보유자에게 관련 활동과 관련된 결정을 승인하거나 막을 현재의 능력만을 갖게 할지라도 단순한 방어권(문단 B26~B28 참조)이 아니라면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한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할 수 있다.

방어권

- B26 권리가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와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가 방어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방어권은 피투자자의 활동에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거나 사건에 연동되는 권리가 모두 방어권은 아니다(문단 B13과 B53 참조).
- B27 방어권은 그 권리와 관련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지 않으면서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문단 14참조).

- B28 방어권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대여자의 손실로 유의적으로 전환되게 할 수 있는 차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대여자의 권리
 - (2)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 본적 지출을 승인하거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의 발행을 승 인하는, 피투자자의 비지배지분 보유자의 권리
 - (3) 차입자가 특정 대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입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대여자의 권리

프랜차이즈

- B29 피투자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종 프랜차이즈 본사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권리를 부여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대체로 본사에 가맹점 운영의 일부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 B30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리는 가맹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결정할 본사 외의 당사자들의 능력을 제약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리는 본사가 가맹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반드시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 B3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는 것과 프랜차이즈 상표를 보호하는 결정을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당사자들이 가맹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하는 현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

- B32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
- B3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법적 형태 및 자본조달 구조와 같은 근본적인 결정의 통제는 프랜차이즈 본사 외의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있으며 가맹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맹점의 이익 변동에 본사가 노출되는 정도가 적을수록, 본사는 단지방어권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B34 종종 투자자들은 의결권이나 비슷한 권리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의결권을 이용하여 지시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절의(문단 B35~B50) 규정을 고려한다.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경우

- B35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문단 B36이나 B37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음의 상황에서 힘을 가진다.
 - (1)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거나,
 - (2)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의결 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선임한다.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나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

B36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의결권이 문단 B22~B25에 따라

실질적이어야 하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 관련 활동은 보통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의 결정으로 행해진다. 다른 기업이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업이 투자자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B37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 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B38 투자자는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다.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다음 예에 따라 힘을 가질 수 있다.

- (1)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문단 B39 참조)
- (2)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문단 B40 참조)
- (3) 투자자의 의결권(문단 B41~B45 참조)
- (4) 잠재적 의결권(문단 B47~B50 참조)
- (5) 위 (1)~(4)의 조합

다른 의결권 보유자와의 계약상 약정

B39 투자자가 계약상 약정이 없으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할 충분한 의결권이 없더라도,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으로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계약상 약정은 투자자가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할 때 다른 의결권 보 유자를 지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B40 그 밖의 의사결정권은 의결권과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상 약정에 정한 권리는 의결권과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제조 공정이나 그 밖의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권리가 없다면 피투자자가 투자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예: 공급자와 주요 고객의 관계)하고 있다고 해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의 의결권

- B41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 능력을 가진 경우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가진다.
- B42 투자자의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다.
 - (1)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의 주식 분산 정도.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가)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에 비하여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I)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활동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 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2) 투자자,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문단 B47~B50 참조)
- (3)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문단 B40 참조)
- (4) 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양상을 포함하여,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가 사실과 상황
- B43 관련 활동의 지시가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고, 투자자가 어떤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의결권 보유자의 조직화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다른 주주의 보유 지분이 널리 분산된 경우에, 문단 B42(1)~(3)에서 열거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는 것이 명백해질수 있다.

적용 사례

사례 4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8%를 취득한다. 나머지 의결권은 수천 명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들은 상의하거나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떠한 약정도 갖지 않았다.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의결권의 비율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48% 지분이 피투자자를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에근거하여, 투자자는 힘의 다른 증거를 고려할 필요 없이 힘의 기근거하여, 투자자는 힘의 다른 증거를 고려할 필요 없이 힘의 기

준을 충족하는데 충분히 지배적인 의결권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 린다.

사례 5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자 12명이 각 5%씩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사이의 합의에서 투자자 A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해임하며 경영진의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합의를 변경하려면 주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다수 표결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투자자 A는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만으로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지 결정하기에는 확실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투자자 A는 경영진의 선임·해임과 경영진의 보상을 결정할 자신의 계약상 권리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투자자 A가 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 투자자 A가 계약상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경영진을 선택하거나선임·해임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B44 다른 상황에서는 문단 B42(1)~(3)에서 열거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수 있다.

적용 사례

사례 6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 2명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26%씩 보유하고 있다. 그 밖의 주주 3명이 나머지 의결권을 각각 1%씩 보유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정은 없다. 이 경우에 투자자 A의 의결권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는 투자자 A

가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투자자 A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투자자 둘만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B45 그러나 문단 B42(1)~(3)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단독으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도 투자자가 힘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투자자는 과거 주주총회의 의결에서 나타난 다른 주주들의 소극적 성향과 같은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문단 B18에서 정한 요소들과 문단 B19와 B20의 지표들의 평가를 포함한다.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적을수록 그리고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활동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적을수록, 투자자의 권리가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 사실과 상황에 더 의존할 것이다. 투자자의 권리와 함께 문단 B18~B20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경우, 문단 B18의 힘의 증거가 문단 B19와 B20의 힘의 지표보다 더중요하다.

적용 사례

사례 7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주 11 명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5%씩 보유하고 있다. 주주들은 상의하거나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떠한 약정도 갖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만으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투자자가 힘을 갖거나 갖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례 8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3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주 3 명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5%씩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의결권은 수많은 그 밖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들은 상의하거나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떠한 약정도 갖지않았다.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관련 주주총회에서 피투자자의 의결권 75%가 투표하였다. 충분한 수의 다른 주주들이투자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였기 때문에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 경우 최근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실질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B46 문단 B42(1)~(4)에서 열거한 요소들을 고려하여도 투자자가 힘을 갖는지 명백하지 않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잠재적 의결권

B47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힘을 갖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다. 잠재적 의결권은 권리가 실질적일 경우에만 고려한다(문단 B22~B25 참조).

B48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관여의 목적과 설계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한다. 이것은 투자자의 명백한 기대, 동기, 그러한 계약 조건에 동의한 이유뿐만 아니라 상품의 다양한 계약 조건을 포함한다.

B49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의결권이나 그 밖의 의사결 정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자는 잠재적 의결권과 결합하여 그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지를 평가한다.

B50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40% 보유하고 있고 문단 B23에 따라 추가로 의결권의 20%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 사례

사례 9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70%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B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30%와 투자자 A가 갖고 있는 의결권 절반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옵션은 앞으로 2년 동안 깊은 외가격 상태인 고정 가격으로 행사될 수 있고, 그 2년 동안 깊은 외가격 상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A는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 A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힘의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높다. 비록 투자자 B가 추가 의결권을 매입할 수 있는 현재 행사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더라도(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피투자자의의결권 과반수가 투자자 B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한 옵션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실질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례 10

투자자 A와 다른 투자자 2명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 피투자자의 사업 활동은 투자자 A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분상품 외에도 투자자 A는 언제라도 고정

가격(현재 외가격 상태이나 깊은 외가격 상태는 아님)으로 피투자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상품이 전환된다면,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60%를 보유하게된다. 채무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투자자 A는 시너지의 실현으로 효익을 얻는다. 투자자 A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능력을 자신에게 갖게 하는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과 더불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는다.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힘

- B51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할 때(문단 B5~B8 참조), 투자자는 설립시점에 정해진 관여와 결정을 그 설계의 일부로 고려하고, 관여하는 거래의 조건과 특징이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충분한 권리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피투자자의 설계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에게 지배력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설계에 관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 B52 또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설립시점에 정해진 콜 권리, 풋 권리, 청산 권리와 같은 계약상 약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계약상 약정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투자자의 법적 경계를 벗어나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라 도, 이 활동들은 사실상 피투자자의 전체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계약상 약정에 포함된 분명한 또는 암묵적 의사 결정권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결정할 때 관련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B53

일부 피투자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에 만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한 피투자자는 설계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투자자의 활동과 이익에 대한 지시가 미리 결정된다. 이경우에는 오직 그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결정만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활동이 될 수 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힘을 갖게 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날 필요는 없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상황이나 사건의 발생에 달려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러한 권리가 방어권이 되지는 않는다.

적용 사례

사례 11

피투자자의 유일한 사업 활동은 설립 문서에 규정된 대로 투자자를 위해 채권을 매입하고 일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일이다. 일상적인 용역은 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른 수금과 원금·이자 지급액의전달을 포함한다. 채권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이전약정(풋)의 별도 합의에 따라 피투자자는 자동적으로 채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유일한 관련 활동은 채무불이행때 채권을 관리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활동만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 전의채권 관리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관련 활동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전의 항등들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직 만기 도래에 따른 현금호름을 수금하고 그 수금액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전체 활동을 평가할 때, 채무불이행 때 자산을 관리할 투자자의 권리만을 고려한다.

이 사례에서 피투자자에 대한 설계에 따르면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의사결정 권한이 필요할 때에만 투자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전 약정(풋) 조건은 전체 거래와 피투자자의 설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록 투자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피투자자의 법적 경계를 넘어서 채무불이행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피투자자의 설립 문서와 함께 그러한 이전 약정 조건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사례 12

피투자자의 자산은 채권뿐이다.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유일한 관련 활동은 채무불이행 채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채무불이행 채권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당사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는다.

B54 투자자는 피투자자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장할 분명한 또는 암묵적 확약을 할 수 있다. 그러한 확약은 이익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노출을 심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충분한 권리를 투자자가 획득하려는 유인을 늘릴 수 있다. 그러므로 피투자자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장하는 확약은 투자자가 힘을 갖는다는 지표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자체만으로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B55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변동이익은 고정되지 않고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다. 변동이익은 오직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문단 15 참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이 변동되는지와 이익의 법적 형식과 관계없이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이익이 변동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예를들면, 투자자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정금리 지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의 대상이 되고 투자자가 채권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목적에서 고정금리 지급은 변동이익이다. 변동 금액(즉, 이익이 변동되는 정도)은 채권의 신용위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비슷하게 피투자자의 자산 관리에 필요한 고정 성과 수수료는 피투자자의 성과위험에 투자자가 노출되기 때문에 변동이익이다. 그 변동 금액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는 피투자자의 능력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B57 이익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배당금, 피투자자가 분배한 경제적 효익(예: 피투자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의 이자),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투자한 투자자산 가 치의 변동
- (2) 피투자자의 자산이나 부채의 관리용역에 대한 보상, 신용 지원이나 유동성 지원에서 생긴 손실에 대한 노출 정도와 수수료, 피투자자가 청산할 때 피투자자의 자산과 부채의 잔여지분, 법인세 혜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얻은 미래 유동성의활용
- (3) 다른 지분 보유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이익. 예를 들면 투자자는 자신의 다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 원가 절감, 부족한 제품을 외부에서 구매하기 위해 영업 기능들을 결합하거나, 독점적 지식의 접근을 확보하거나, 일부 영업이나 자산을 제약하는 것과 같이 피투자자의 자산과 결합하여 자신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

힘과 이익의 연관

위임된 힘

B58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결정한다. 투자자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다른 기업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도 결정한다. 대리인은 주로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본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문단 17과 18 참조). 그러므로 때때로본인의 힘을 대리인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을대신한 것이다. 단지 다른 당사자가 의사결정자의 결정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것은 아니다.

B59 투자자는 일부 특정 사안이나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투자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의사결정권을 자신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둘 이상인 상황에서, 본인들 각각은 문단 B5~B54를 고려하여 자신이 피투자자에 대해 힘을 갖는지 평가한다. 문단 B60~B72에서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 본인인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B60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를 결정할 때 특히 아래의 모든 요소에 대한 의사결정자 자신, 관리되고 있는 피투자자, 피투자자 에 관여하는 다른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한다.

(1)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문단 B62와 B63 참조)

- (2)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문단 B64~B67 참조)
- (3) 보상 약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문단 B68~B70 참조)
- (4) 피투자자에 투자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노출되는 정도(문단 B71과 B72 참조)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각 요소들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B61 한 당사자가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해임권)
 를 가지고, 이유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B60
 에서 열거한 모든 요소의 평가가 필요하다(문단 B65 참조).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 B62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 (1) 의사결정 약정에 따라 허용되고 법에 규정된 활동
 - (2) 그러한 활동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자의 재량권
- B63 의사결정자는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피투자자가 노출되도록 설계된 위험, 관련 당사자에게 전가되도록 설계된 피투자자의 위험, 피투자자의 설계에서 의사결정자의 관여 수준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의 설계에 유의적으로 관여한 경우(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결정을 포함), 그러한 관여는 의사결정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와 유인이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B64 다른 당사자가 갖는 실질적인 권리는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해임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해임권을 갖고 있고 이유에 관계없이 의사 결정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그리고 개별적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없다면), 그 권리만으로는 의사결정자가 주로 당사자들을 대신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결정을 확실하게 내릴 수는 없다. 또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함께 활동해야 할 당사자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다른 경제적 이익(즉, 보상과 그 밖의 이익)과 관련된 그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요소의 가중치를 더욱 적게 두어야 한다.

B66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 평가할 때 의사결정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실질적인 권리는 해임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활동에 소수의 다른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한 의사결정자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이다(권리에 대한추가 지침과 권리가 실질적인지에 대한추가 지침은 문단B22~B25 참조).

B67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를 고려할 때에는 피투자자의 이사회 (또는 그 밖의 의사결정기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사결정 권한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문단 B23(2) 참조).

보상

- B68 피투자자의 활동에서 예상되는 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보상 금액 및 보상과 관련된 변동성이 클수록,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 B69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결정할 때 다음 조건 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다.
 - (1) 의사결정자의 보상은 제공된 용역에 상응한다.
 - (2) 보상 약정은 독립적인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비슷한 용역과 기술 수준에 대한 약정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상황, 금액만을 포함한다.
- B70 의사결정자는 문단 B69(1)과 B69(2)에서 제시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 만으로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노출

- B71 피투자자에 대해 다른 지분(예: 피투자자에게 투자하거나 피투자 자의 성과에 대한 보증을 제공)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 평가할 때 그 지분의 이익 변동에서 자신이 노출된 정도를 고려한다. 피투자자의 다른 지분을 갖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B72 피투자자에 대해 갖는 다른 지분이 이익 변동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할 때 의사결정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보상과 다른 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크기와 관련된 그 변동성이 클수록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자신의 이익 변동 노출이 다른 투자자의 노출과 다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점이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면,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의 후순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형태의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일 수 있다.

의사결정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의 총 변동에서 상대적인 자신의 노출 정도를 평가한다. 주로 피투자자의 활동에서 예상되는 이익 에 기초하여 이러한 평가를 하지만, 이 평가에서 의사결정자가 보 유하는 다른 지분으로 피투자자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최 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적용 사례

사례 13

의사결정자(펀드운용사)는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투자 위임장에 기술된 제한적으로 정해진 한도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규제를 받는 펀드를 설립, 판매, 관리한다. 펀드는 여러 상장기업 지분증권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정해진 한도에서 펀드운용사는 투자할 자산에 재량권을 가진다. 펀드운용사는 펀드에 10% 비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자신의 용역 보수로 펀드 순자산 가치의 1%에 해당하는 시장 기준 수수료를 받는다. 이 수수료는 제공한 용역에 상응한다. 펀드운용사는 자신이투자한 10%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 펀드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지도 않았다. 투자자들은 펀드운용사의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갖고 있지 않지만 펀드가 설정한 특정 한도에서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록 펀드운용사는 위임장에서 정한 한도에서 그리고 규제 요건에 따라 펀드를 운용할지라도,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운용

사의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펀드운용사는 제공한 용역에 상응하는 시장 기준수수료를 받으며 펀드에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펀드운용사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 노출을 유발하지 않고도, 그러한 보상과 투자 때문에 펀드운용사가 펀드활동으로 인한 이익 변동에노출된다.

이 예에서, 제한된 한도에서 펀드운용사의 의사결정 권한과 함께 펀드의 이익 변동에 펀드운용사가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할 때 펀드운용사가 대리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펀드운용사는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례 14

의사결정자는 많은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를 설립, 판매, 관리한다. 의사결정자(펀드운용사)는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펀드 운용 약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운용사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재량권을 가진다. 펀드운용사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자산의 1%에 해당하는 시장기준 수수료를 받으며, 정해진 이익 수준을 달성한다면 펀드 총이익의 20%를 받는다. 수수료는 제공한 용역에 상응한다.

비록 펀드운용사는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해야 할지라도,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펀드운용사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는 고정급과성과급을 수수료로 받는다. 또 보상은, 단독으로 고려할 경우 펀드운용사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이익 변동에 유의적 노출을 유발하지 않고도 펀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펀드운용사의 이해관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한다.

위의 상황과 분석을 아래 기술된 사례 14A~14C에 적용한다. 각 사례는 서로 독립적이다.

사례 14A

펀드운용사도 펀드에 2%를 투자하고 있으며 그 펀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한다. 펀드운용사는 자신이 투자한 2%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단순다수결로 펀드운용사를 해임할수 있으나, 이는 펀드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펀드운용사의 2% 투자는 펀드운용사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 노출을 유발하지 않고도 펀드 활동의 이익 변동에 펀드운용사의 노출을 늘린다. 펀드운용사를 해임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권 리는 방어권으로 보는데,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비록 펀드운용사는 광범위한 의사결 정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지분과 보상의 이익 변동에 노출되지만, 이러한 노출은 펀드운용사가 대리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펀드운 용사는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례 14B

펀드운용사는 펀드에 더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단순다수결로 펀드운용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는 펀드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 펀드운용사를 해임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권리는 방어권으로 보는데,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운용사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수수료로 받지만, 투자와 보상을 함께 고려하면 펀드운용사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펀드 활동의 이익변동에 노

출된다. 펀드운용사의 경제적 이익(펀드운용사의 보상과 다른 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의 규모나 그와 관련된 변동이 클수록, 펀드운용사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더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펀드운용사가 본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면, 보상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펀드운용사는 20%의 투자로도 자신이 펀드를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즉, 보상이나 다른 요소들이 다르다면), 지배력은 투자 수준이 다를 때 생길 수 있다.

사례 14C

펀드운용사는 펀드에 20% 비율로 투자하고 있으나, 그 20%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펀드에는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펀드운용사와 독립적이며 다른 투자자들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매년 펀드운용사를 지정한다. 만약 이사회가 펀드운용사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펀드운용사가 수행하는 용역은 그 업계의 다른 운용사가수행할 수 있다.

펀드운용사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수수 료로 받지만, 20% 투자와 보상을 함께 고려하면 펀드운용사가 본 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펀드 활동의 이익변동에 노출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펀드운용사를 해임할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결정한다면 펀드운용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한다.

이 사례에서는 펀드운용사의 실질적인 해임권에 더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따라서 펀드운용사가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보상과 투자에서 생기는 펀드의 이익 변동에 노출되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실질적인 권리는 펀드운용사가 대리인임을 나타낸

다. 그러므로 펀드운용사는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례 15

피투자자는 고정금리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되며 고정금리 자산유동화증권의 포트폴리오를 매수한다. 지 분상품은 우선 채무투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피투자자의 잔여 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내 자산유동화증권 발 행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신용위험 및 포트폴리오의 관리와 관련된 이자율 위험의 노출을 수반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잠재적 채무상품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설립 시점의 지분상품은 매수한 자산 가치의 10%에 해당한다. 의사결 정자(자산운용사)는 피투자자의 투자안내서에 기술된 한도내에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고 활성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이러한 용역에서 자산운용사는 시장 기준 고정급(즉, 관리 자산의 1%)을 수수료로 받으며, 피투자자의 이익이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면 성 과급(즉, 이익의 10%)을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는 제공하는 용 역에 상응한다. 자산운용사는 피투자자의 지분 35%를 보유한다. 나머지 지분 65%와 모든 채무상품은 널리 분산되고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많은 수의 제삼자가 보유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다른 투자자들의 단순다수결로 이유에 관계없이 해임될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수수 료로 받는다. 보상은 펀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펀드운용사의 이해관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한다. 자산운용사는 지분의 35%를 보유하기 때문에 펀드의 활동과 보상의 이익 변동에 노출된다.

피투자자의 투자안내서에 기술된 한도내에서 자산운용사는 펀드 를 운용하지만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 자결정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해임권은 널리 분산된 다수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으므로 분석할 때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는 자산운용사는 채무상품에 비해 후순위인 자신의 지분이 펀드의 이익 변동에 노출된 점에 더 중점을 둔다. 지분 35%를 보유함으로써 손실과 피투자자의이익 권리에 후순위로 노출되며, 이는 자산운용사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노출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사례 16

의사결정자(스폰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단기 채무상 품을 발행하는 멀티 셀러 콘듀잇(multi-seller conduit)2)을 후원한 다. 멀티 셀러 콘듀잇은 우량 등급의 중기 자산 포트폴리오(포트 폴리오 내 자산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신용위험 노출 정도를 최소로 함)에 대한 투자로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다양한 양도자는 그 콘듀잇에 우량 등급의 중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판매한다. 각 양도자는 콘듀잇에 판매한 포트폴리오 자산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시장 기준 용역 수 수료를 받고, 채무불이행 채권을 관리한다. 각 양도자는 자산 포 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신용손실에 대비하여 콘듀잇에 이전한 자 산의 초과담보를 최초 손실 보전으로 제공한다. 스폰서는 콘듀잇 의 조건을 설정하고, 시장 기준 수수료를 받고, 콘듀잇의 운영을 관리한다. 그 수수료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한다. 스폰서는 판매 가 허가된 판매자들이 콘듀잇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고, 콘듀잇 이 매입할 자산을 승인하며, 콘듀잇의 자금조달 결정을 한다. 스 폰서는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스폰서는 콘듀잇의 잔여이익에 권리가 있으며, 콘듀잇에 신용을 보강하고 유동성을 지원한다. 양도자가 손실을 부담한 후, 스폰서

²⁾ 멀티 셀러 콘듀잇(multi-seller conduit): 다수의 판매자 자산을 보유하는 구조로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매번 유 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필요없이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의미함

는 콘듀잇 전체 자산의 5%까지 손실을 부담하여 신용을 보강한다. 채무불이행 자산에는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스폰서의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폰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는 시장 기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콘듀잇의 활동에 따른 이익 변동에 노출되는 데, 이는 콘듀잇의 잔여이익에 대한 스폰서의 권리, 신용보강, 유 동성 지원 때문이다(즉, 콘듀잇은 중기 자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단기 채무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다). 비록 각 양도자가 콘듀잇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스폰서는 콘듀잇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즉, 스폰서는 콘듀잇의 조건을 설정하고 자산의 의사결정권(매입하는 자산과 그 자산의 양도자들을 승인) 과 콘듀잇의 자금조달(새로운 투자대상을 정규적으로 물색해야 한 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콘듀잇의 잔여이익에 대한 권리와 신용보강 및 유동성 지원의 제공으로 스폰서는 콘듀잇 활동의 이 익 변동에 노출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의 노출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그러한 노출은 스폰서가 본인임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스 폰서는 콘듀잇을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모든 투자자의 이익 을 극대화하도록 활동해야 할 스폰서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스폰 서가 본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 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B75 다음은 투자자와의 관계의 성격상 투자자를 위해 사실상 대리인 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예이다.

- (1) 투자자의 특수관계자
- (2) 투자자의 출자나 대여로 피투자자의 지분을 수취하는 당사자
- (3) 투자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소유한 피투자자의 지분을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며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한 당사자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가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고 그 러한 권리가 자발적으로 독립된 당사자의 상호합의 조건에 근 거하는 상황은 제외)
- (4) 투자자의 후순위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자신의 운영 자금을 조 달할 수 없는 당사자
- (5)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와 같은 피투자자
- (6) 전문용역 제공자와 유의적 고객 사이의 관계와 같이, 투자자와 긴밀한 사업 관계의 당사자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B76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일부분을 별도의 실체로 보아 처리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투자자가 그 간주별도실체를 지배하는지 고려한다.

B77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의 일부분을 별도의 실체로 보아 처리한다.

피투자자의 특정 자산(그리고 만약 있다면 관련된 신용보강)은 피투자자의 특정 부채와 특정 다른 지분의 유일한 지급 원천이다. 그 특정 부채를 가진 당사자들 외에는 그 특정 자산이나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잔여 현금흐름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사실상 특정 자산의 이익은 나머지 피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없으며 간주별도실체의 부채는 나머지 피투자자의 자산으로 지급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간주별도실체의모든 자산, 부채, 자본은 전체 피투자자와는 구분된다. 그러한 간주별도실체는 흔히 '사일로(silo)'라 부른다.

B78 문단 B77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일부에 투자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간주별도실체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이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지시되는지를 알아낸다. 간주별도실체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때 투자자는 그 실체에 자신이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와 투자자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별도 실체 일부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B79 투자자가 간주별도실체를 지배한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별도 실체 일부를 연결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와 연결을 할 때 피투자자의 별도 실체 일부를 제외한다.

계속적 평가

- B80 문단 7에서 열거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다시 평가한다.
- B8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평가하는 방법에 그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관련 활동이더 이상 의결권으로 지시되지 않고, 그 대신에 계약과 같은 다른 약정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B82 어떤 사건은 투자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얻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다른 당사자(들)가 갖는 의사결정권이 시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다.
- B83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는 투자자가 문단 7(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익을 수취할 권리나 의무에 노출되는 것이 중단된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예: 성과급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 B84 투자자는 자신이 대리인이나 본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었는지를 고려한다.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의 변화는 비록 투자자가 전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고, 그 반

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투자자나 다른 당사자의 권리에 변화가 생기면, 투자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의지위를 다시 고려한다.

B85 시장 상황의 변화로 문단 7에서 열거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지거나 본인과 대리인 간의 전반적인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지배력이나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투자자의 최초 평가는 단순히 시장 상황의 변화(예: 시장 상황에 따른 피투자자의 이익 변화)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B85A 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의 목적과 설계를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27에서 기술한 투자기업 정의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기업은 투자기업이다. 문단 B85B~B85M에서 정의의 요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사업의 목적

B85B 투자기업의 정의에서는 기업의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임대 수익) 또는 둘 다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임을 요구한다. 기업의 투자모집요강, 기업 발행물, 다른 법인이나 파트너십 문서와 같이 기업의 투자목적을 나타내는 문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 증거로 제공될 것이다. 예를 들면, 추가 증거로 기업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중기투자 사업을 한다고 내세우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당사자(예: 잠재적 투자자나 피투자자)에게 내세우는 방식을 포함한다. 반대로 기업이 피투자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이 목적인 투자자로 자신을 내세울 경우 기업의 그 사업 목적은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과 일치하지 않

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투자수익과 함께 개발, 생산, 마케팅 활동에서도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문단 B85I 참조).

B85C 투자 관련 용역(예: 투자자문용역, 투자관리, 투자지원, 행정용역) 이 투자기업에 중요하더라도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그러한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다.

B85D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피투자자에게서 투자이익(시세차익으로 얻은 이익이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하고, 별도로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투자기업에 별도의 중요한 수입 원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이러한 투자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1) 관리용역과 전략적 조언을 피투자자에게 제공
- (2) 대출, 자본약정, 보증과 같은 재무적 지원을 피투자자에게 제공

B85E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소유하며 그투자기업이나 다른 상대방에게 문단 B85C~B85D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인 경우, 그 투자기업은 문단 32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투자 관련 용역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기업 그 자체가 투자기업인 경우에,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문단 31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출구전략

B85F 기업의 투자계획은 사업 목적의 증거도 제공한다.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다른 점 중 하나는 투자자산을 비한정 기간 보유하도 록 설계되지 않고, 제한된 기간에 보유한다는 것이다. 지분투자와

비금융자산투자는 비한정 기간 보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은 실질적으로 모든 지분투자와 비금융자산투자에서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계획의 출구전략을 문서화해야 한다. 투자기업은 비한정 기간에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상품(예: 영구채 투자)의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은 개별 투자건별로 특정 출구전략을 문서화할 필요는 없으나 종류별 또는 포트폴리오별 투자자산의 투자를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잠재적 전략을 식별해야 한다. 계약 위반이나 미이행과같은 채무불이행 사건만을 위한 출구 방침(exit mechanisms)은 이평가 목적상 출구전략으로 보지 않는다.

B85G 출구전략은 투자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모지분증권 투자와 관련한 출구전략의 예에는 기업공개, 사모, 사업매각,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의 (투자자) 분배, 자산의 판매(피투자자의 청산에 따른 피투자자 자산의 매각 포함)가 포함된다. 공개시장에서 거래 되는 지분투자와 관련한 출구전략의 예에는 사모, 공개시장에서의 투자자산 매각이 포함된다.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출구전략의 예에는 전문 부동산중개업자나 공개시장을 이용한 부동산 매각이 포함된다.

B85H 투자기업은 법, 규제, 세무나 비슷한 사업상 이유로 자신과 연관되어 설립된 다른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기업인 피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기업인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투자이익

B85I 기업의 투자로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투자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다른

효익(피투자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는)을 얻거나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기업은 시세차익·투자수익, 또는 둘 다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효익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피투자자의 공정, 자산, 기술의 취득, 사용, 교환, 개발. 이것은 피투자자의 자산, 기술, 재화,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불평등하 거나 독점적인 권리(예를 들면, 자산의 개발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피투자자에게서 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는 것)가 있는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구성원을 포함한다.
- (2) 재화나 용역을 개발, 생산, 마케팅, 공급하기 위해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과 피투자자 사이에서 맺은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서 정의)이나 그 밖의 약정
- (3)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의 차입약정 담보를 위해 피투자자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이나 자산(그러나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자신의 차입 담보로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 (4)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에게서 그 기업의 피투자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그 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선택권
- (5) 문단 B85J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과 피투자자 사이의 거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거래
 - (개) 그 기업,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 피투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이 이용할 수 없는 거래조건을 갖고 있다.
 - (내) 공정가치가 아니다.
 - (F) 피투자자나 기업의 사업활동(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포함)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
- B85J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에게서 시세차익과 투자수익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의 효익을 얻기 위해 동종 산업, 동일 시장, 동일 지역 내에 둘 이상의 피투자자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다. 문단

B85I(5)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단지 피투자자들 사이의 거래 때문에 투자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 측정

B85K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는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정의의 요소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 우에는 항상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대부분의 투자자산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측정치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정의)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한다.

B85L B85K(1)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수 행한다.

- (1) 투자부동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 치모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선택한다.
-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 호의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을 선택한다.
- (3)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B85M 투자기업은 본사 부동산 및 관련 설비와 같은 일부 비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금융부채도 보유할 수 있다. 문단 27(3)의 투자기업 정의 중 공정가치 측정요소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에 적용한다. 따

라서 투자기업은 그 비투자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85N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한다(문단 28 참조).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기업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할 때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둘 이상의 투자자산

- B85O 투자기업은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투자자산을 보유한다.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투자자산을 보유한 다른 투자기업의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 함으로써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다.
- B85P 기업이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일 투자 자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반드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기업은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 (1) 창업 중이고, 적절한 투자자산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 여러 투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아직 실행하지 못한 경우
 - (2) 투자자산을 처분한 후 이를 대체할 다른 투자자산을 아직 취득 하지 못한 경우
 - (3)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자산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예: 최소 요구 투자액이 개별 투자자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인 경우)이고, 그단일 투자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하도록 설립한 경우

(4)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둘 이상의 투자자

- B85Q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에는 투자관리용역을 받기 위해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투자기회들을 얻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는 여러 투자자가 있다. 여러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외의다른 효익을 얻을 가능성은 적다(문단 B85I 참조).
- B85R 그 밖에 투자기업은 광범위한 투자자 집단의 지분을 대표하거나 지원하는 단일 투자자에 따라, 또는 그 단일 투자자를 위하여 설립될수 있다(예: 연금펀드, 정부투자펀드, 가족신탁).
- B85S 기업에 일시적으로 단일 투자자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단일 투자자만 있을 수 있다.
 - (1) 기업공개가 진행 중이며, 적절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인 경우
 - (2) 상환된 소유지분을 대체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경우
 - (3)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투자자들

B85T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에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연결실체의 다른 구성원과 특수 관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정의)에 있지 않은 여러 투자자들이 있다.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투자자가 있으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시세차 익이나 투자수익 외의 다른 효익을 얻을 가능성은 적다(문단 B85I 참조).

B85U 그러나 투자자가 그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더라도 여전히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은 자신의 종업원집단 (예: 주요 경영진)이나 다른 특수 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별도의 '병행(parallel)'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펀드는 그 기업의주요 투자펀드의 투자자산을 반영한다. 이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특수 관계에 있더라도 이 펀드는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할 수 있다.

소유지분

B85V 투자기업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적 기업이다.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은 일반적으로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해당하는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 형태(예:파트너십 지분)이다. 그러나 투자자 중 일부가 특정 투자자산이나특정 투자자산집단에만 권리가 있거나 순자산에 다른 비율의 몫을가지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투자자가 있더라도 그 기업이 투자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B85W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부채 형태의 유의적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도 부채보유자로서 그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된다면 여전히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할수 있다.

회계처리 규정

연결 절차

B86 연결재무제표는: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한다.

- (2)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자산 장부금액과 각 종속 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 (3)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재고자산이나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된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발생한 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나타난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동일한 회계정책

B87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 대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측정

B88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일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기초한다. 예를 들면 취득일 후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일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관련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다.

잠재적 의결권

B89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에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는 비율은 현재의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결정하고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B9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영한다.

B90 어떤 상황에서는 기업이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 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B91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종속기업의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보고기가 종료일

B9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같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추

가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B93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간의 길이와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기간마다 같아야 한다.

비지배지분

B94 보고기업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 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또 보고기업은 비지배지 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B95 종속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비지배지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을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산정한다.

비지배지분 보유 비율의 변동

B96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자본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보고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 변동을 반영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보고기업은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

지배력의 상실

- B97 지배기업은 둘 이상의 약정(거래)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상황은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게 한다.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업은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은 지배기업이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1) 둘 이상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한다.
 - (2) 둘 이상의 약정이 종합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일 거래를 구성한다.
 - (3) 하나의 약정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약정 체결에 의존한다.
 - (4)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정당화된다. 예를 들 면 주식의 일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처분하고 후속적으로 시 장가격보다 높게 처분하여 보상받는 경우이다.
- B98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다음을 제거한다.
 - (개)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 채의 장부금액
 - (나)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이 있다면 그 장부금액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기타포괄 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
 - (2) 다음을 인식한다.
 - (개)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 사건, 상황에서 받은 대가가 있다면 그 공정가치

- (나)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 사건, 상황에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분배 가 포함될 경우, 그 분배
- (F)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그 투자의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
- (3) 문단 B99를 근거로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한다.
- (4) 회계처리에 따른 모든 차이는 손익으로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99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종속 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을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같은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그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관련 자산을 처분할 때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 그와 같이 재평가잉여금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투자기업 지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B100 기업이 투자기업에서 제외될 때, 종전에 문단 3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던 종속기업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를 적용한다. 지위의 변동일을 간주취득일로 본다. 간주취득일의 종속기업 공정가치는 간주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이나 염

가매수차익을 측정할 때 이전대가로 본다. 모든 종속기업은 지위 의 변동일부터 이 기준서 문단 19~24에 따라 연결한다.

B101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때, 문단 32에 따라 계속 연결되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위의 변동일에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을 중단한다. 투자기업은 마치 지위 변동일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연결을 중단한 그 종속기업에 문단 25와 26을 적용한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

시행일

- C1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2호,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 제1028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 C1A 2012년 11월에 공표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 규정 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C2~C6을 개정하였고 문단 C2A~C2B, C4A~C4C, C5A, C6A~C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개정 내용도 조기 적용한다.
- C1B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7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2, 4, C2A, C6A, 부록 A를 개정하였고, 문단 27~33, B85A~B85W, B100~B101, C3A~C3F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 C1D 2015년 11월에 공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8호 개정)'에 따라 문단 4, 32, B85C, B85E, C2A를 개정하였고 문단 4A~4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

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 C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되 문단 C2A~C6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C2A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이후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의 '투자기업'과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만을 표시하면 된다. 기업은 당기나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C2B 이 기준서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 C3 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과 관련된 종전의 회계처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기 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에 따른다면 최 초 적용일에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이 이 기준서에 따라 여전히 연결대상인 기업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에 따른다면 최초 적용일에 연결대상이 아닌 기업이 이 기준서에 따라 여전히 연결대상이 아닌 기업

- C3A 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투자기 업인지를 평가한다. 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이라고 결론짓는다면, 기업은 문단 C5~C5A 대신에 문단 C3B~C3F를 적용한다.
- C3B 문단 32에 따라 연결되는 종속기업(문단 C3과 C6이나 문단 C4~C4C 중 관련된 항목을 적용)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의 규정이 항상 유효했던 것처럼 자신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투자기업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하고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으로 조정한다.
 - (1) 종속기업의 종전 장부금액
 - (2)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치 조정에 따른 누적금액은 최초 적 용일의 직전 회계연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 C3C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일 이전에, 투자 기업은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종전에 보고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이 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 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었을 금액을 나타낸다면 그 금액을 사용한다.
- C3D 문단 C3B~C3C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의), 문단 C3B~C3C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기일 수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위와 달리 당기라면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의 시작일에 인식한다.

- C3E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기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투자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과 거 회계처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 C3F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처음으로 적용한 후의 기간에 '투자기업'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문단 C3A~C3E의 '최초 적용일'은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 있는 개정 내용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로 이해한다.
- C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에 따라 연결하지 않았던 피투자자를 최초 적용일에 투자자가 연결하기로 한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피투자자가 사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정의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연결하지 않았던 피투자자를 이 기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치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연결해 왔던 것처럼(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을 측정한다.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개와 (내)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개) 인식된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금액
 - (나)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에 따른 종전 장부금액
 - (2) 피투자자가 사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정의에 따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연결하지 않았던 피투자자를 이기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치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연결(피투자자에 대한 영업권 인식 없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기술된 취득법을 적용)해 왔던 것처럼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을 측정한다.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지배력

을 획득한 시점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개)와 (내)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개) 인식된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금액
- (나)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에 따른 종전 장부금액
- C4A 문단 C4(1) 또는 C4(2)에 따른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정의에 따름)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피투자자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일에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간주취득일은 문단 C4(1)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이며 이는 당기일 수 있다.
 - (2) 피투자자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기술한 취득법을 적용하되 피투자자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간주취득일은 문단 C4(2)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 시점이며 이는 당기일 수 있다.
 -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시점이 당기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간주취득일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3)과 (4)의 모든 차이를 직전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3) 인식된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금액
 - (4)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에 따른 종전 장부금액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이 당기 라면,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의 시작일에 인식한다.
- C4B 투자자가 문단 C4~C4A를 적용하고 이 기준서에 따른 지배력 획득일이 2008년에 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시행일보다 더 늦다면, 문단 C4와 C4A에서 언급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를 말한다. 지배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의 시행일 전에 획득하였다면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이나 제1103호(2007년 제정)를 적용한다.

- C4C 투자자가 문단 C4~C4A를 적용하고 이 기준서에 따른 지배력 획득일이 2008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시행일보다 더늦다면, 문단 C4~C4A에 따라 피투자자를 소급하여 연결한 모든기간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배력을 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2008년 개정)의 시행일 전에 획득하였다면 다음의 (1)이나 (2)를 적용한다.
 - (1) 문단 C4~C4A에 따라 피투자자를 소급하여 연결한 모든 기간 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의 시행일 이전 기간에는 2007년에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기준서의 규정은 그 후속 기간에 적용한다.
- C5 최초 적용일에 투자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2호에 따라 연결하였던 피투자자를 더 이상 연결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서의 규정이 유효했었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측정하였을 금액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측정한다. 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날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1)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종전 장부금액

- (2)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으로 인식된 금액
- C5A 문단 C5에 따른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정의에 따름), 투자자는 문단 C5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기일 수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투자자는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날이 직전 기간의 시작일보다 더 이르다면 투자자는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인식한다.
 - (1)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의 종전 장부금액
 - (2)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으로 인식된 금액
 -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이 당기라면,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의 시작일에 인식한다.
- C6 문단 23, 25, B94, B96~B9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로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의 개정 사항이다. 문단 C3을 적용하거나 문단 C4~C5A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문단 B94의 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의 보고기간에 속한 손익은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 (2) 지배력을 획득한 후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단 23과 B96은 이 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변동에 적용하지 않는다.
 - (3) 문단 25와 B97~B99의 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에 지배력이 상 실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을 다시 작성하

지 않는다. 또 이 개정을 처음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직전 기간'의 참조

- C6A 문단 C3B~C5A에서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로 언급하였으나, 기업은 표시된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문단 C3B~C5A의 '직전 기간'은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표시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C6B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되지 않은 비교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여 그것이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기술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7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기준서 등의 대체

- C8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의 연결재무제 표와 관련된 규정을 대체한다.
- C9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도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4.12.19.)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2015.5.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

- IE1 기업은 10년을 존속 기간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사채 등의 모집요강에는 그 합자회사의 목적이 존속 기간에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회사의 자본 중 1퍼센트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 적당한 투자자산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약 75명의 책임사원들은 그 기업의 자본 중 99퍼센트를 제공한다.
- IE2 합자회사는 20X1년에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20X1년 말까지 적당한 투자를 찾지 못한다. 20X2년에 합자회사는 ABC사의 지배지분을 취득한다. 20X3년까지 다른 투자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5개의 영업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이러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정보를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외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다.
- IE3 합자회사는 10년의 존속 기간에 각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러한 처분은 현금판매, 피투자자 증권의 성공적인 주식공모에 따르는 시장성있는 자본증권의 분배, 그리고 공개시장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가 없는 기업들에 투자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

- IE4 제공된 정보에서 합자회사는 설립된 20X1년부터 20X3년 12월 31일 까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음의 모든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1)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부터 자금을 획득하고 그러한 유한 책임사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 (2) 합자회사의 유일한 활동은 그 투자자산의 존속 기간동안 시세차 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영업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합자회사는 자본투자 모두에 대해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 하였다.
 - (3)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재무적 정보를 그들의 투자자들에게 보고한다.
- IE5 추가적으로,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 (1)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얻는다.
 - (2)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와 특수 관계가 없다.
 - (3) 합자회사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를 통해 얻은 지분의 단위로 나타 낸다.
- IE6 합자회사는 일정 기간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직 신설기간이었고 적당한 투자기회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례 2

IE7 과학기술회사(이하 '기업 T'라 한다)는 과학기술신생회사들에 투자 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High Technology Fund(이하 'HTF'라 한 다)를 설립하였다. 기업 T는 HTF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HTF를 지배한다. 나머지 HTF의 30퍼센트 지분은 특수 관계가 없는 10명의 투자자들이 소유한다.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줄 수 있는 경우, HTF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 HTF는 그 투자에 대한 출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HTF는 HTF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문인에 의해 관리된다.

결론

- IE8 HTF의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을 위해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리용역을 제공하지만, HTF는 다음의 상황 때문에 투자기업이 아 니다.
 - (1) HTF의 지배기업인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자산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주는 경우 HTF가 보유한 피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다. 이것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에 추가하여 효익을 제공한다.
 - (2) HTF의 투자계획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 T가 보유한 옵션은 HTF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출구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례 3

IE9 부동산회사는 상점, 사무실, 그 밖의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 소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동산회사는 별도의 완전 소유 종속기업에 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종속기업은 다른 유의적인 자산이나 관련된 투자부동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차입을 제외한 유의적인 부채는 없다. 부동산회사와 각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그들의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한다. 부동산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처분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찾기 위해 공정 가치를 사용한다. 비록 공정가치는 성과지표의 하나이긴 하지만, 부동산회사와 그 투자자들은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하는데, 예측현금흐름과 임대수익과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다른 측정치를 사용한다. 부동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공정가치 정보가 그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측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주요성과지표의 집단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IE10 부동산회사는 부동산 관리, 자본적 지출, 재개발, 마케팅과 입주자 선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부동산과 자산관리활동을 하며, 이 중 일부는 제삼자에게 위탁한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위한 부동산의 선 택, 개발, 그러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디자인과 건설 업무를 위한 공급자와의 협상을 포함한다. 이런 개발활동은 부동산 회사의 사업활동에서 별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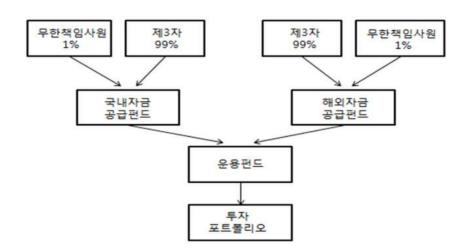
결론

- IE11 부동산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 (1) 부동산회사는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모두 이외의 다른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리스협상, 리모델링, 개발활동, 마케팅을 포함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가지고 있다.
 - (2) 부동산회사의 투자계획에는 그 투자자산에 대한 특정한 출구전략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회사는 그러한 부동산투자를 비한정 기간 보유하려는 계획이다.
 - (3) 비록 부동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그 투자부 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더라도, 공정가치는 그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경영진이 사용하는 주요 측정치가 아니다. 성과를 평

가하고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다른 성과지표가 이용된다.

사례 4

IE12 운용펀드(master fund)는 10년의 존속 기간으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운용펀드의 자본은 관련된 2개의 공급펀드(feeder funds)가 보유한다.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비슷한 규정을 충족하기위해 서로 관련되게 설립되었다. 공급펀드는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1퍼센트를 투자받고, 그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가 없는 자본투자자로부터 99퍼센트를 투자받아 자본화하였다(어떤 특정 당사자가지배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IE13 운용펀드는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배당, 이자 또는 임대수익과 같은)을 얻기 위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은 운용-공급구조의 유일한 목적이 큰 자산집단에 투자하기 위하여 별도의 틈새시장에서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운용펀드는 보유하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한다. 운용펀드는 단기 및 중기의 채무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데, 일부는 만기일까지 보유되고 다른 일부는 매매될 것이지만, 어떤 투자를 보유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매매할 것인지 특별히 식별하지 않는다. 운용펀드는 채무투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모든 투자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

한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은 공급펀드로부터 공정가치 기준으로 기간별 재무정보를 받는다. 운용펀드와 공급펀드의 소유는 모두 자 본의 단위로 나타낸다.

결론

- IE14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각각 만족한다. 다음의 조건이 존재한다.
 - (1) 운용펀드와 공급펀드 모두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얻었다.
 - (2) 공급펀드의 투자자에게 전달된 운용-공급구조의 사업 목적은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운용펀드에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잠재적인 출구전략이 식별되고 문서화되었다.
 - (3)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대한 지분의 출구전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공급펀드와 연관되어 설립되고 공급펀드를 대신하여 투자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4) 운용펀드가 보유하는 투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 되며, 운용펀드의 투자에 대한 정보는 공급펀드를 통해 공정가 치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 IE15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비슷한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설립된다. 두 펀드를 함께 고려할 때, 두 펀드는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 (1)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
 - (2)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완전 출자하더라도, 공급펀드는 공급펀드(그리고 무한책임사원)와 특수 관계가 없는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자금이 모집된다.
 - (3) 공급펀드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로 취득한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FRS 10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도입	BC1~BC11
_ IFRS 10의 구조와 IASB의 결론	BC8~BC11
연결재무제표의 표시(2003년 전부 개정)	BCZ12~BCZ18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면제	BCZ12~BCZ15
소수주주지분 소유자들의 만장일치 합의	BCZ16~BCZ17
비공개기업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면제	BCZ18
연결재무제표의 적용범위(2003년 전부 개정)	BCZ19~BC28F
적용범위 제외	BCZ19
일시적 지배	BCZ20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엄격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BCZ21
투자기업의 중간 지배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BC28A~BC28F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	BC29~BC39
평판위험	BC37~BC39
지배력의 정의	BC40~BC70
힘	BC42~BC55
관련 활동	BC56~C59
이익	BC60~BC67
힘과 이익의 연관	BC68
공유되지 않는 지배력	BC69~BC70
지배력 평가	BC71~BC146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	BC76~BC80

결론도출근거 목차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활동 BC81~BC92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 BC93~BC124

위임된 힘(대리관계) BC125~BC142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BC143~BC146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BC147~BC148

계속적 평가 BC149~BC153

회계규정 BC154~BCZ190

연결 절차 BC154

비지배지분(2003년 전부 개정과 2008년 개정) BCZ155~BCZ159

손실의 귀속(2008년 개정) BCZ160~BCZ167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2008년 개정) BCZ168~BCZ179

지배력의 상실(2008년 개정) BCZ180~BCZ190

시행일과 경과 규정 BC191~BCZ203

시행일 BC191~BC194

경과 규정 BC195~BC199

경과 규정(2008년 개정) BCZ200~BCZ203

IAS 27과 SIC 12의 대체 BC204~BC205

ED 10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06

원가·효익 고려 BC207~BC214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 (2012년 개정) BC215~BC291

배경 BC215~BC221

과제의 범위 BC222~BC227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BC228~BC235

투자기업의 정의 BC236~BC254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C255~BC267

지위의 재평가와 변동 BC268~BC271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BC272~BC283

경과 규정 BC284~BC287A

시행일과 조기 적용 BC288

결론도출근거 목차

FASB와의 공동 심의 BC289

투자기업의 영향 분석 BC292~BC317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BC294~BC300

비교 가능성 BC301~BC302

미래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유용성 BC303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304~BC308

작성자들의 규제준수원가에 대한 효과 BC309~BC312

이용자들의 분석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BC313~BC316

요약 BC317

IFRS 10에 대한 소수의견

IFRS 10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 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 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
	for Financial		념체계
	Reporting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
	International Financial		준의 최초채택
	Reporting Standards		
IFRS 5	Non-current Asset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
	Held for Sale and		과 중단영업
	Discontinued		
	Operations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Disclosures		
IFRS 8	Operating Segments	제1108호	영업부문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Statements		

	국제회계기준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11	Joint Arrangements	제1111호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
	in Other Entities		의 공시
IFRS 13	Fair Value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Measurement		
IAS 1	Presentation of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Financial Statements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in Foreign Exchange		
	Rates		
IAS 27	Separate Financial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Statements		
IAS 28	Investments in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Associates and Joint		에 대한 투자
	Ventures		
IAS 31	Interests in Joint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Ventures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Recognition and		측정
	Measurement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SIC 12	Consolidation-Special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Purpose Entities		

IFRS 10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10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도입

- BC1 IASB가 IFRS 1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 근거에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아래에 언급되는 IAS 27은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를 말하고 IAS 28은 IAS 28 '관계기업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를 말한다.
- BC2 IASB는 IAS 27과 SIC 12의 실무적용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해 연결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다음의 상황에서 지배력의 개념을 다르게 적용한다.
 - (1)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만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의결권을 과반수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그리고 의결권 이 명확하게 지배력의 근거이다)
 - (2) 특수목적기업(SIC 12의 '경제적 실질' 개념이 적용되는)에 관여 하고 있는 상황
 - (3) 대리관계와 관련된 상황
 - (4) 방어권과 관련된 상황
- BC3 IAS 27은 보고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의 연결을 요구하였으며 지배력을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SIC 12는, 특수목 적기업에 대한 IAS 27의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3), 위험과 보상을

더욱 강조하였다.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배력 개념을 일 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어떤 피투자자가 IAS 2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어떤 피투자자가 SIC 12의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때로 투자자가 위험의 과반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양적 평가가 되었다.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에 기초하는 평가는 특정 회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설계의 기회를 만들었다.

- BC4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투자자가 설립하거나 후원한 경우를 포함한 '부외기구(off balance sheet vehicles)'(예: 증권화기구)에 투자자가 관여하여 노출되는 위험의 투명성 부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그 밖의 관련자들은 IASB에 그러한 '부외기구'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 규정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 BC5 IFRS 10을 개발하면서, IASB는 2008년 12월에 발표한 ED 10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ED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와 FASB가 그들의 양해 각서(MOU)에서 2011년까지 연결에 대한 공통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견제출자들은 이후 발행되는 기준서에 단지 비슷한 것이 아닌 동일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IASB와 FASB에 연결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IFRS 10을 개발하는 IASB의 심의는 2009년 10월 이후 FASB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³⁾ 원본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12를 논의할 때 특수목적기업 (SPEs)을 언급하고, 공개초안 ED 10 연결재무제표와 관련심의 및 재심의를 논의할 때 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ies)을 언급한다. SIC 12에서 SPE는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고, 법률적 약정을 통해 이사회,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특수목적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엄격하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설립되는 기업으로 설명하였다. ED 10에서 구조화기업은 의결권이나 그 비슷한 권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동이 지시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BC6 FASB는 2011년 1월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 US GAAP의 연결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의사결정자가 본인과 대리인 중 누구인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변동지분기업(variable interest entities)과 의결지분기업(voting interest entities) 모두에 관련된 연결 규정을 변경하도록 제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IFRS 10에 포함된 본인·대리인 평가에 대하여 IASB와 FASB가 공동으로 개발한 규정과 비슷할 것이다.

BC7 ED 10은 연결되는 피투자자와 연결되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시 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심의하면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비연결 구조화기업의지분에 대한 공시사항을 하나의 포괄적인 기준서인 IFRS 12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2에 첨부되는 결론도출근거는 그 기준서를 개발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들(ED 10의 공시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고려 포함)을 요약한다. 따라서 IFRS 10은 공시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결론도출근거는 ED 10에 제안된 공시규정에 대한 의견에 IASB가 고려한 사항을기술하지 않는다.

IFRS 10의 구조와 IASB의 결론

BC8 IFRS 10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IAS 27의 규정과 적용지침을 대체한다. 또한 SIC 12도 대체한다. 연결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투자기업의 회계처리 방법과 그러한 지분에 대한 추가 공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IASB는 2011년 후반에 투자기업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4)

^{4) 2012}년 10월에 IASB가 공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문단 BC215~BC317에서 논의된다.

BC9 IFRS 1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모든 규정을 재고하지는 않았다. 문단 4의 적용범위, 문단 19~25와 B86~B99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규정은 IASB의 재고없이 IAS 27 또는 SIC 12에서 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이 부분은 IASB 연결과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BC10 2003년에 전부 개정할 때, IAS 27은 당시에 구성된 IASB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와 함께 공표되었다. 그 결론도출근거는 후속적으로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되었다. IASB는 재고하지 않은 사안들을 다룬 IAS 27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이번 결론도출근거에 포함시켰다. 이 자료는 BCZ라는 기호로 표시된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문단에서 IFRS에 대한 상호참조가 갱신되었고 필요한 편집상의 사소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BC11 IFRS 10의 역사적 배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2003년 전부 개정과 후속 개정에 대한 IASB의 승인 기록을 이 결론도출근거 다음에 두었다. 뿐만 아니라, 2003년과 그 이후, 일부 IASB 위원들은 IAS 27의 전부 개정과 후속 개정에 반대하였고 그와 관련된 그들의 소수의견도 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그러한 소수의견은 이 결론 도출근거 다음에 두었다.

연결재무제표의 표시(2003년 전부 개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면제

BCZ12 IAS 27(2000년 전부 개정) 문단 7은 연결재무제표의 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단 8은 지분 전부 또는 사실상 지분 전부를 다른 기업이 소유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3년에 IASB는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이러한 면제조항을 철회하거나 개

정할지를 검토하였다.

- BCZ13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법에 의하여 IFRS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 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BCZ14 IASB는 이용자들이 별도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그들의 목적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대체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BCZ15 면제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IASB는 면제될 상황을 수 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소수주주지분 소유자들의 만장일치 합의5

- BCZ16 2002년 공개초안에서는 소수주주지분(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지분 포함) 소유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 지분의 전부가 아닌일부를 다른 기업이 소유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지배기업으로 면제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BCZ1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로 모든 소수주주에게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소수주주지분의 소유자가 연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반대하지 않을 때, 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다른 기업이 소유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 지배기업은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⁵⁾ IAS 27(2008년 개정)은 '소수주주지분'이라는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

비공개기업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면제

BCZ18 IASB는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IAS 27, IAS 28, IAS 310에 따라 회계처리할 때가장 잘 충족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IASB는 그러한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은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연결재무제표의 적용범위(2003년 전부 개정)

적용범위 제외

BCZ19 IAS 27(2000년 전부 개정) 문단 13은 일시적으로 지배할 의도인 경우나 종속기업이 엄격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

일시적 지배

BCZ20 2003년에 IASB는 이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할지 여부와 최근에 비슷한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한 다른 기준제정기구와 정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IASB는 자산의 처분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준의 일부로서 이러한 의문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속기업을 12개월 이내에 처분할 의도로 취득하고 경영진이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그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을면제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 제4호(ED 4) '비유동자산의 처분과 중단영업의 표시(Disposal of Non~current Assets and Presentation of Discontinued Operations)'는 매각예정자산이 투자자에 의하여 보유되는지 종속기업에 속하는

⁶⁾ IAS 31은 2011년 5월 발표된 IFRS 11로 대체되었다.

지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ED 4에서 일시적으로 지배할 의도인 경우에는 연결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IAS 27의 개정 초안에 포함하였다.7)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엄격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BCZ21 IASB는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ASB는 지배기업이종속기업을 지배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으로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자체로 인하여 지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기업의 중간 지배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BC28A 2014년 12월에 IASB는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에도 IFRS 10 문단 4(1)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FRS 10을 개정하였다. 이 질문이 제기된 이유는 투자기업이 IFRS 10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2014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과 IAS 28 개정안)'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치한다.

BC28B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기준 중 하나인 IFRS 10의 종전 문단 4(1) (라)에서는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IFRS

^{7) 2004}년 3월에 IASB는 IFRS 5를 발행하였다. IFRS 5는 이러한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하여 일시적으로 지배할 의 도인 경우에 연결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IFRS 5 결론도출근거를 참조한다.

를 적용하여 공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라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규정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는 문단 4(1)(水)~(다)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투자기업인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어떠한 종속기업도 연결하지 않는다면, 문단 4(1)에서 규정한 면제 규정을 투자기업인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의 의 종속기업이 되는 지배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받았다.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대신에 IFRS 10 문단 31에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BC28C IASB는 IFRS 10 문단 4(1)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연결실체 내 중간 지배기업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생기는 원가가 그 효익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중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였다고 보았다. IASB는 이전에 문단 4(1)의 조건이 중간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중간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결합되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BC28D 또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할때, IFRS 12에서 요구한 공시사항이 IFRS 7 '금융상품: 공시'와IFRS 13 '공정가치측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의해 보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결합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자체가 지배기업이면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 되는 기업에 대해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유지하는 결정은 충분히 뒷받침 될 수있다고 판단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중간 지배기업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효익없이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이는 IFRS 10 문단 BC309와 BC31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가는절감하면서 목적 적합한 정보는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기

업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도와 배치될 것이라고 보았다.

BC28E IASB는 같은 이유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 28 문단 17은 종속기업이 면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기 위하여 IFRS 10 문단 4(1)과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BC28F 그리고 IASB는 IFRS 12의 관련된 공시 규정이 투자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12 문단 6(2)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2 문단 6에서는 전에 IFRS 12가 투자기업에 적용되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IFRS 12가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며 IFRS 10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지배기업에는 그 적용범위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투자기업은 IFRS 12에서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

BC29 IASB가 IFRS 10을 공표하는 목적은 하나의 연결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지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견고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문단 BC2~BC4 참조). 연결을 위한 기준은 지배력이며, 이 기준은 피투자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BC30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으로 지배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의사결정이 필요없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힘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지배력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지배력의 정의를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IAS 27과 SIC 1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래 설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지배력을 평가할 때 ED 10이 위험과 보상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BC31 IASB는 지배력이 연결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확인하였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하고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피투자자에 대해 보유하지못할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 BC32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위험과 보상에 더욱 많이 노출될수록,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더욱 큰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위험과 보상 그리고 힘은 완벽하게 상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과 보상(IFRS 10에서는 변동이익으로 언급되었다)에 노출되는 정도가지배력의 지표이고 지배력을 평가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만으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였다.

- BC33 IASB는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지배력의 지표 그 이상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힘 요소와 이익 요소 둘 모두를 내포한 지배력 모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 BC34 IASB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위험과 보상(즉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정도가 전혀 없이 투자자가 보유한 힘으로 효익을 얻는 것이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다.
- BC35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다음 사항을 언급하였다.
 - (1) 연결과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언제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의결권이나 비슷한 권리를 이용하여 지시되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 지배력의 추정 또는 대용으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의 특정 수준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한 그러한 특정한 추정을 도입하는 것이 피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일관된 연결기준을 개발하는 목적과 모순된다고 결론지었다.
 - (2) 일부 피투자자를 위해 서로 다른 연결 모형을 갖는 것은 그러한 모형을 적용하는 피투자자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투자자가 SIC 12를 적용받는 특수목적기업인지 식별하는 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ED 10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피투자자 유형의 연속체(the continuum of investee types)를 구분된 모집단으로 나누려는 시도와 기업의 다른 모집단을 다른 연결 모형의 대상으로 하려는 시도는 특정 모집단에 속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피투자자의 경우 실무상 다양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IASB는지배력을 평가할 때 ED 10에서 제안된 피투자자의 다른 유형

간 구별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71~BC75 참 조).

- (3) 특정 상황에서 지배력의 추정 또는 대용으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를 포함하는 것은 그런 노출의 측정에 대한 더 많은 압박을 주는 것이다. IASB는 특히 위험과 보상의 측정에 대한 필요가 양적 기준(예를 들어,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에 중 점을 둔 모형)에 근거한 연결 모형을 채택하게 될 것을 우려하 였다. 위험과 보상에 대한 양적 분석은 필연적으로 매우 복잡 하고, 결과적으로 이해, 적용, 감사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IASB 는 특정 사실이나 상황에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의 질적 분석 과 피투자자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질적 분석에 의해 식별되는 지배 당사자와 다른 지배 당사자를 양적모형에 의해 식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의 분석은 FASB의 FIN 46(전부 개정) '변동지분기업의 연결(Consolidation of Variable Interest Entities)'의 양적 연결 모형에 대하여 FASB 관련자들이 제기 한 우려와 일치한다. FASB는 지배력을 결정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힘과 피투자자로부터 이익에 초점을 맞춘 질적 분석을 요구하도록 FIN 46을 개정하기 위하여 SFAS No. 167 'FIN 46(전부 개정)'에 대한 개정(Amendments to FIN 46 (Revised))' 을 발행하였다.8)
- (4) IASB는 모든 피투자자에 적용하는 지배력 모형이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경제적 관계와 불일치하는 특정 회계 결과를 얻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즉 거래 설계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BC36 IASB는 지배력 모형과 위험과 보상 모형을 경쟁적 모형으로 보지 않는다.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나 IFRS 10에서 표현된 변동이익의 노출은 지배력의 필수 요소이다. 거의 모든 경우, 이들 접근법에 따른 회계적 결론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지배력 기준

⁸⁾ SFAS 167은 ASU No. 2009~17에 의해 후속적으로 무효화되었다. SFAS 167의 요구사항은 ASU No. 2009~17에 포함되어 있다.

모형에 따르면, 투자자가 위험과 보상 접근법과 관련된 자의적인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s)'(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효익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피투자자와 관련된 위험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SIC 12 문단 10(3)과 (4)와 같은)에 의존하기 보다는, 피투자자와 관계있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IASB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경제적 노출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특정 회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설계의 가능성을 그야말로 감소시킬 것이다.

평판위험

BC37 금융위기 동안, 일부 금융기관들은 증권화기구나 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촉진하였기 때문에, 이들 기구에 자금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어 평판을 잃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였고 일부의 경우 그러한 투자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IASB는 평판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연결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ED 10에서 지배력과 관련하여 평판위험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평판위험'이라는 용어는 피투자자의 파산으로 피투자자의 평판이 훼손되는 위험과 관련되고 따라서 투자자나 스폰서는 법적 또는 계약적 의무가 없더라도 그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피투자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BC38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평판위험이 연결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 출자들은 평판위험이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의 일부이므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C39 IASB는 비록 위험이 비계약적 원천에서 발생하였더라도, 평판위험이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평판위험이 그 밖의 사실이나 상황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려요소라고 결론지었다. 평판위험 그자체가 힘의 지표는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배력의 정의

BC40 IFRS 10에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기술한다.

BC41 지배력의 정의에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힘

BC42 ED 10에서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 27에서 지배력을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 IASB는 비록 피투자자의 전략적인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힘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지배력의 정의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특정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으로 피투자자의 활동

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할 수 있다. 실제로,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 힘은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를 이용하여 지시되지 않는 피투자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BC43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지배력의 정의를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지시하는 힘(power to direct)'과 '활동 (activities)'의 의미에 혼란을 느꼈다. 의견제출자들은 '지시하는 힘'이라는 용어 이면에 있는 원칙을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들은 힘이 피투자자의 유의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피투자자의 이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에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BC44 ED 10은 힘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힘은 절대적일 필요가 없고, 힘은 행사된 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힘은 다른 사람(others)이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ED 10에서 힘은 특별한 상황이 되거나 사건이 발생할 때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만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권리에서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힘이 활동을 지시하는 법적 또는 계약적 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가 활동을 지시할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를 보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였다. 또한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힘은 다른 사람(others)이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결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C45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IASB는 힘이 활동을 지시할 법

적 또는 계약적 권리인지, 아니면 활동을 지시할 능력인지 고려하 였다.

BC46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 접근법에 따라,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 자가 활동을 지시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를 보 유할 때에만 힘을 보유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방어권의 범주 안 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른 사람의 바람과 어쩌면 반대 가 될 수 있는,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법적 권리나 계약적 권리(문단 BC101참조)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힘을 보유하지 못한다. 또한, 잠 재적 의결권은 행사되거나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유자에게 활동을 지시할 계약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지배력의 평가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잠재적 의결권은 그 자체만으로는 보유자에게 지시할 계약상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일관성 있게 '해임(kick-out)' 또는 비슷한 권리에 적용하면, 그 권리가 의 사결정자를 해임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보유할 때 의사결정자는 결코 힘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C47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다른 접근법보다 판단을 덜 필요로 하며 따라서 지배력의 정의를 더 일관되게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자가 지배력 평가를 자주 바꾸게 된다고 우려한다. 이런 변화(예: 잠재적 의결권의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의 지분 변동이나 시장 변화)는 투자자의 통제 밖에 있을 수 있다.

BC48 IASB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로 정의되는 힘이 다른 접근법들보다 판단을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접근법이 IASB가 생각하기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확고한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가 없더라도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상황을 투자자가 무시하도록 만들 수 있기때문이었다.

- BC49 뿐만 아니라, IASB는 '능력' 접근법에 기초한 원칙이 명확히 표현되고, 이 기준서에 지배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예시하는 적용지침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작성자와 다른 사람이 이 접근법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BC50 결과적으로, IASB는 힘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모든 상황에서,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권리(예: 의결권, 잠재적의결권, 그 밖의 약정에서의 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서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
- BC51 추가적으로 만약 투자자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BC52 또한 IASB는 투자자가 현재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대로 단순히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해서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투자자 의결권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다른 고려요소가 없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 나머지 30%의 의결권을 한 당사자가 가지고 있고 그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소수 주주는 힘

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 BC53 또한 IASB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오늘 당장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해야 할 절차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에게는 힘을 부여하는 의결권이나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전에 회의를 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연은 투자자가 권리 행사를 하기로 했을 때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할 다른 장벽이 없다면,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BC54 뿐만 아니라, IASB는 특히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에 대한 결정이 이미 정해진 피투자자의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한 결정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피투자자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의 원천이다.
- BC55 힘에 기초한 원칙을 논의할 때, IASB는 '능력' 접근법이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 때문에 피투자자의 연결 여부가 자주 바뀔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문단 BC47 참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당사자의 변경은, 관련 사실과 상황이 달라질 때 '계약상 권리'모형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배력 모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의 변화와 잠재적 의결권의 평가에 대한 우려에 관한논의는 문단 BC124와 문단 BC152를 참조한다.

관련 활동

BC56 ED 10은 지배력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안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에게서 받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IASB는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 (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 BC57 ED 10에 대한 검토의견은 그러한 명확화가 의결권 또는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다수의 당사자가 있을 수 있는 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BC58 투자자가 그러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경우, 그 힘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이 없는 행정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 어떤 투자자(만일 있다면)가 지배력정의의 힘 요소를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유의적인'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으면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거의 없는 투자자가 그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예를 들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거의 영향이 없는 유의적이지 않는 수많은 활동 중 가장 의미있는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
- BC59 비록 이 점에 있어서 IFRS 10에 포함된 지침이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지만, IASB는 수정된 표현이 모든 피투자자에게 잘 적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는 피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영업 및 재무 활동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재고를 구매하고, 자본적 지출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피투자자의 전

략적 영업 및 재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힘을 보유할 것이다.

이익

BC60 IFRS 10의 지배력의 정의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익의 개념을 사용한다.

BC6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익과의 관련은,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는 것이 힘과 지배력의 평가와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지배력의 첫 번째 요소에 포함되었다(문단 BC58 참조).

BC62 지배력의 두 번째 요소는 투자자에게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변동이익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관여를 요구한다. 이는 지배력이 피투자자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전달한다는 개념을 유지한다. 지배력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관여로 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상황에서 힘과 지배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론이므로 지배력은 힘의 동의어가 아니다. ED 10에서 '효익(benefits)'이 양(+)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기 때문에 '효익' 대신 '이익(retur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BC63 IASB는 '이익'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시너지 이익(예: 배당이나 투자가치 변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으로 투자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투자자의지배에 따른 효익을 얻을 수 있다. IASB는 이익의 정의를 좁게

한정하는 것은 효익을 얻는 그러한 방법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64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익'이 배당과 같은 재무 이익만 언급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이익의 광범위한 설명이 광범위하게 정의하겠다는 IASB의 의도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IASB는 투자자의 이익이 온전히 양(+), 온전히 부(-) 또는 포괄적으로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C65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IASB는 이러한 기준에서 변동성을 흡수하는 금융상품을 통한 관여를 언급하여야 하는지 고려하였는데, 변동성을 흡수하는 금융상품(instruments)이 변동성을 일으키는 위험에 대한 피투자자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BC66 일부 금융상품은 위험을 보고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설계된다. 심의 과정에서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다른 기업에 이익의 변동성을 창출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기업 A)이 기업 Z(기업 Z는 약정에 관여된 어떤 당사자와도 관련이 없음)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가정한다. 기업 A는 투자자에게 기업 Z의 신용위험에 연계된 채권[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한 자금을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기업 A는 스왑거래상대방과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을 체결하여 기업 Z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부담한다. CDS는 스왑거래상대방이 지급한 수수료의 대가로 기업 Z의

신용위험을 기업 A에 넘긴다. 기업 A의 투자자는 기업 A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이익과 CDS 수수료가 반영된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스왑거래상대방의 경우 기업 A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변동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기업 A에 대한 관여가 없다. 왜냐하면 CDS가 기업 A의 이익 변동성을 흡수하는 것이아니라 기업 A에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BC67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자가 그러한 금융상품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익의 변동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변동성을 흡수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힊과 이익의 연관

BC68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힘은 투자자가 노출되거나 권리를 갖고 있는 이익과 연관되어야 한다. 힘과 이익간의 연관은 투자자에게 생기는 이익의 비례적 부분과 투자자가 보유한 힘의 크기가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ASB는 많은 당사자들(예: 주주, 채권자, 대리인)이 피투자자로부터 변동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오직 한 당사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있다고 언급하였다.

공유되지 않는 지배력

BC69 ED 10에서 한 당사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IFRS 10을 심의하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공동약정과 관련한 추가 내용은 문단 BC83 참조.)

BC70 ED 10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해 절대적인 힘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당사자들은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흔히 법이나 규정에 의해 힘이 제한된다. 이와 비슷하게, 비지배지분과 같은 다른 당사자들은 투자자의 힘을 제한하는 방어권을 보유할 수 있다. 재심의를 하는 동안 IASB는 비록 다른 당사자들이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방어권을 갖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할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문단 BC93~BC124에서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지배력 평가

- BC71 IFRS 1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하는 고려요 소들이 다양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투자자의 성격과 관계 없이 모든 피투자자의 연결기준으로서 지배력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 지배력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BC72 ED 10에서, IASB는 구조화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때 특정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ED 10은 구조화기업을 기업의 활동이 본 질적으로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제한된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 BC73 IASB가 구조화 기업의 세부항목을 특별히 포함한 때의 의도는 의결권으로 지배하는 전통적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이다. 즉, 구조화 기업과 관련된 지침이 관련성이 없다면, IASB는 전통적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평가하는 경우 그러한 지침을 모두 읽거나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 BC74 그러나, ED 10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지배력을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지침이 적용되는 피투자자 그룹(a subset of investees)을 만드는 데 반대하였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접근법은 IAS 27과 SIC 12(비일관된 적용과 그 적용에 따라 피투 자자 특유의 다양한 특성에 의해 잠재적인 취사선택을 야기한 두 개의 지배력 모형)의 지침을 적용하면서 직면하였던 문제를 영구적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의견제출자들은 구조화기업의 지침이일반적으로 모든 피투자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평가의 지침을 하나의절에서 통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75 IASB는 이 논리에 동의하였고 모든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평가의 지침을 하나의 절에서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IASB의 의도는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 기준을 갖는 것이며 그러한 기준은 지배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피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

BC76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활동이 제한되는) 피투자자의 설계에 관여하는 것은 지배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강한 지표이며, 특히 일부 상황에서, 그들은 피투자자의 설계 관여만으로도지배력 정의 중 힘의 요소가 충분히 충족된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SIC 12는 지배력의 지표 중 하나로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였고 첨부된 결론도출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특수목적기업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종종 운영되므로 특수목적기업의 설립 후에 어느 기업도 특수목적기업의 일상적인활동에 대한 분명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못한다(즉, 특수목적기업이 '자동조종'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지배되는 활동의 측면은 처음에 규정되거나 계획된 계약상 조항에 의하여 미리 정의되고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도, 후원자나 수익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자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동조종' 방식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특수목적기업의 설립시점에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미리 결정하는 당사자가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종종 제공하기도 한다.

- BC77 IFRS 10을 개발하면서, IASB는 피투자자를 설립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한 ED 10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설계에 관여하는 것이 반드시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할 의사결정 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여러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설계에 관여하며 피투자자의 최종 구조는 모든 당사자(투자자, 피투자자의 스폰서, 피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양도자 및 거래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당사자를 포함)가 합의한 것들을 포함한다.
- BC78 예를 들면, 비록 증권화의 성공이 증권화 기구(securitisation vehicle)로 이전하는 자산에 달려있지만, 양도자는 그 기구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의사결 정권도 없을 수 있다. 기구 설정에 관여하여 얻은 효익은 기구가만들어지면 곧 없어질 수 있다. IASB는 피투자자의 설립에 관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적절한 연결기준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BC79 그러나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하였다.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가 관련 활동, 힘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그러한 권리의 보유자를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력을 평가

할 때 확실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알아내고 투자자의 지 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C80 IASB는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이해하는 것은 피투자자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과 이익이 피투자자의 법적 경계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활동과 이익 모두의 고려를 수반한다고 언 급하였다. 예를 들어, 증권화 기구의 목적은 수취채권 포트폴리오 의 위험(주로 신용위험)과 효익(수취하는 현금흐름)을 기구와 관련 된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지시될 수 있고 거 래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은 수 취채권이 불이행되는 경우 그러한 수취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기구는 설계된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작동하는 채권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는 거래의 이익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질 수 있 다. 기구의 설계는 의사결정 권한이 필요한 때에만 투자자가 관련 활동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풋 약정의 조건은 전반적인 거래와 피투자자의 설립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풋 약정의 조건은 투자자가 거래의 이익에(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 전이라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권화 기구의 활 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지 결론짓기 위하여 피투자 자의 설립 문서와 함께 고려될 것이다.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활동

BC81 IAS 27, SIC 12 및 ED 10에서 여러 당사자들이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을 특정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배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침이 없으면 구조화기업의 연결을 피하기 위한 거래 설계의기회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지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이 쉽게 숨겨지고 다른 당사자 간에 나뉠 수도 있다고 주장하 였다.

- BC82 IASB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 (1) 공동지배력
 - (2) 공동지배력이 아닌 의사결정 공유
 - (3)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권을 각각 보유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

공동지배력

BC83 IFRS 11에서 공동지배력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약정의 지배력을 공유한다고 정의한다.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 당사자가 그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고 따라서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는다. IFRS 11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가능하다. IASB는 IFRS 10에서 현재 IFRS 11의 범위에 포함된 약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동지배력이 아닌 의사결정 공유

BC84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지 만 그러한 권리는 공동지배력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다섯 당사자가 각각 기업 Z의 지분을 20%씩 보유하고 있고 기업 Z의 이사회 의석 1석씩을 보유한다고 하자. 모든 영업과 재무에 관한 전략적 결정(즉 기업 Z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활동에 대한 결정)은 다섯 명의 이사 중 네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기업 Z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당사자는 기업 Z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Z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은 공유되고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도 기업 Z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시 한 번 IASB는 IFRS 10의 규정이 그런 상황에서 IFRS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다수의 당사자들

BC85 힘의 공유를 논의할 때, IASB는 대부분의 피투자자의 경우 한 당사자나 조직(body)에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에 의하여 지시받은 피투자자의 지배 기구 또는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기구를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힘의 기준이 될 것이다.

BC86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각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예로 멀티-셀러 콘튜잇, 멀티-셀러 증권화 및한 당사자가 자산을 관리하고 다른 당사자가 자금조달을 관리하는 피투자자를 언급했다. IASB는 IFRS 10에서 다수의 각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상황을 특별히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BC87 IASB는 그러한 피투자자의 경우, 활동을 지시할 능력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 어떤 당사자도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다른 활동이 사실상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부는 관련 당사자에게 어떤 활동이다른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모든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할 수 있다.

BC88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둘 이상의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각각 일방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지배력의 정의 중 힘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정하였다. 하나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질 것이고 결국 힘을 보유한다고 여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힘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IASB는 어떤 활동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정 방식(mechanism)은 기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89 IASB는 투자자가 모든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힘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면, 연결을 회피할 가 능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다른 당사자를 관여시킴으로써 연결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남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BC90 IASB의 결론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일방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경우 한 당사자가 힘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투자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더 커지

게 된다.

- BC91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둘 이상의 투자자(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서)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의사결정권을 보유하는 상황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 당사자 또는 조직(body)이 일반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문단 BC85 참조). IASB는 이 문제에 대한 IASB의 결론이 피투자자가 사업적인 이유 없이 둘 이상의 당사자를 의사결정에 관여시킴으로써 특정 회계 결과를 얻도록 피투자자를 설계하는 유인을 만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BC92 IASB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IFRS 11이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

- BC93 IAS 27과 SIC 12는 의결권과 잠재적 의결권 외에,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지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그러한 권리가 투자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 BC94 IASB는 이 문제를 ED 10에서 방어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함으로 써 어느 정도 다루었다. 그러나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BC95 IASB는 힘을 갖기 위해 투자자가 지시할 수 있는 활동(즉, 피투자 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부족함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는 것이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가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결권

BC96 IAS 27과 ED 10과 마찬가지로, IASB는 IFRS 10에 의결권으로 지배하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의 평가를 다루는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결권의 과반수

BC97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으로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직접 또는 이사회구성원의 선임을 이용하여)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한다는 개념을 일부 표현을 수정한 IAS 27에서 승계하였다. IASB는 그러한 투자자의 의결권은 그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의사결정 또는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상 약정 등을 이용하여)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별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의결권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기업에 부여하는 데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

BC98 2005년 10월9에 IASB는 IAS 27이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면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그 당시에 그러한

⁹⁾ IASB Update(2005년 10월호)에 의결권 과반수 미만의 지배력에 대한 IASB 관점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

경우가 발생할 특별한 상황과 그 결과로 실무상 다양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IAS 27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BC99 IASB는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의결권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갖게 한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ED 10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예를 ED 10에 포함하였다.
- BC100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없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에 대하여 엇갈리는 관점을 나타내었다.
- BC101 '계약상 권리' 지배 모형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과반수 미만으로 보유한 투자자는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투자자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확고한 권리가 없고 다른 투자자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다.
- BC102 '계약상 권리' 모형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능력' 모형에서와 같이 다른 주주가 소극적이라는 전제에 의존하여 힘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만일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고자 한다면 투자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장하는 계약상 권리가 (필요하다면 의결권에 추가하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BC103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ED 10에서 제안한 '능력'모형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다른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없을 경우에도,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상황이 있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그들은 IASB에 그러한 경우가 언제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그들은 다음 사항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1) 공개초안의 제안이, 투자자가 보유한 피투자자의 의결권이 아주 적어도(예: 10% 또는 15%),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참석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2) 그러한 제안이, 투자자가 주주구조, 조직화정도 및 다른 주주의 향후 의도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낮은 비율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에 특히 얻기 어려울 것이다.
- BC104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하였으나 문단 BC44~BC50에서 언급한 이유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는 상황으로 힘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의결권의 경우, IASB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고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
- BC105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각국의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한 규정은 종종 주주가 보유한 권리를 결정하거나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는 투자자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이유로, IASB는 의결권 조건으로 50%에 선을 긋는 것이 일부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연결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106 또한 IASB는 다른 나라에서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할 때 '능력' 모형이 연결 여부를 더 적절하게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능력' 모형은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와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한 권리를 고려하여 모든 피투자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결권의 경우, 투자자는 의결권이나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관련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갖기 위해 충분한지, 또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이나 그 밖의 권리로 그 주주가 행동하기로했을 때 투자자가 관련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평가한다. 이 모형은 다른 당사자가 잠재적 의결권, 해임권 또는이와 비슷한 권리를 보유한 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BC107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IASB의 의도가 모든 피투자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낮은 비율(예: 10% 또는 15%)로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다. 투자자는 항상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데충분한지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에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증거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BC108 IASB는 어떤 한 당사자도 피투자자에 대해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ASB는 예상되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많을수록(즉 절대적 보유 지분이 클수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클것이다.

- (2) 다른 의결권 보유자에 비하여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많을 수록(즉 상대적 보유 지분이 클수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3)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당 사자들이 많을수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 능성이 클 것이다.
- BC109 또한 IASB는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는 의결권과 잠재적 의결권을 계약상 권리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 결정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수 있고,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 데고려할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IFRS 10은 이러한 상황에서고려할 추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IASB는 투자자의 의결권이 적을수록 그리고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적을수록,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 추가 증거에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BC110 또한 IASB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고려한 후, 만약 그 증거로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면 그러한 결론은 투자자의 권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게 한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IASB의 의도는 반증이 없다면 의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는 가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 BC111 투자자가 최초로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보유지분 의 크기와 다른 주주의 의결권만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평가하는

경우,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추가 증거가이용 가능하게 되면 재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와 다른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고, 피투자자와 유의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서, 투자자가 현재 지배력을 갖고있고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잠재적 의결권

- BC112 투자자는 만약 행사된다면 투자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옵션, 전환상품 또는 그 밖의 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 BC113 IAS 27은 그러한 금융상품을 잠재적 의결권으로 언급하였다. 그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평가할 때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이 고려되었다. 만약 투자자에게 잠재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옵션이나 전환상품을 현재행사할 수 있다면, IAS 27은 투자자가 그 잠재적 의결권을 마치현재의 의결권인 것처럼 보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IAS 27에 따르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및 재무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
- BC114 전부 개정된 지배력의 정의 때문에, IASB는 IFRS 10의 지침을 마련하면서 잠재적 의결권을 재고하였다.
- BC115 IASB가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하여 고려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잠재적 의결권이 보유자에게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
 - (2)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잠재적 의결권이 보유자에게 피투자

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가?

- BC116 IASB는 ED 10에서 투자자는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적 의결권의 보유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얻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만약 의결 기구가 투자자의 의도대로 따라 주거나, 그 금융상품의 상대방이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거나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할 특별한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투자자는 힘을 보유할 것이다.
- BC117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행사되지 않은 잠재적 의결권은 다른 사실 및 상황과 함께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적용 지침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였다. 투자자의 의도대로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견제출자들은 잠재적의결권에 의한 힘의 논의에서 기술한 다른 상황이 잠재적 의결권 상품이 아닌 이유로 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BC118 IASB는 지배력을 다루는 IFRS 10의 지침이 잠재적 의결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의 권리가 투자자에게 지배력을 주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투자자는 자신과 다른 당사자가 보유하는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BC119 IASB는 그런 상품이 보유자에게 항상 지배력을 부여하거나 결코 지배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것은 일부 상황에서 연결 여부를 부적절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 BC120 따라서 IASB는 잠재적 의결권이 권리 보유자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고 행사되거나 전환되면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다

른 권리와 함께 고려할 때) 그러한 권리는 보유자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는 '개입(step in)'하고 의결권을 획득하고 관련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라면 보유자는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있다.

- BC121 IASB는 그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보유자가 사실상 수동적인 지배 주주 또는 실질적인 해임권의 보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지배모형에 따르면 비록 주주들로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해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라도, 다른 요소가 없다면 지배주주가 피투자자를 지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축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잠재적의결권 보유자는 의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각상황에서, 그러한 절차가 과연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는 것을 방해할 만큼 유의적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 BC122 IASB는 힘이 활동을 지시할 계약상 권리나 활동의 적극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면, 행사되지 않은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는 다른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결코 힘을 보유하지 못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힘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다. 그래서 IASB는 실질적으로 잠재적 의결권이 그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사하거나 전환하기 전에 보유자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 BC123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가 힘을 보유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배력 모형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ASB는 언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인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지침과 적용사례를 추가하였다. 비록 평가는 판단이 필요하지만 IASB는 투자자가 필요한 판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재적 의결권은 이유가 있어 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조건과 상황이 그 이유를 반영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 조건과 상황(즉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의 평가는 금융상품이 행사나 전환 전에 보유자에게 힘을 부 여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BC124 일부 관련자들은 단지 시장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제안된 모형 이 지배력 평가를 빈번하게 변경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잠 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투 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하고 그리고 연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 인가?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IASB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 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금융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 환가격과 기초주식의 그 당시의 시장가격의 비교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비록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지의 결정 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이것 은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투자자가 투자자와 피투 자자 사이의 시너지를 구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 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재무적 또는 다른 장애물) 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IASB는 시장 상황 (즉 기초주식의 시장가격)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결 결론 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임된 힘(대리관계)

BC125 IAS 27과 SIC 12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 또는 본인인지 평가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침의 부재로 실무상 다

양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IASB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리관계를 다루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BC126 ED 10에서 다음의 가정에 근거하여 대리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 (1) 본인과 대리인은 모두 자신의 효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대리인을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 (2) 본인은 대리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지급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제공받은 용역에 상응하지 않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 아니라는 지표이다.
- BC127 ED 10은 이중 역할(dual roles)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투자자가 직접 의결권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당사자를 대신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보유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공개초안은 투자자가 대리인으로 행동하는지 또는 본인으로 행동하는지를 평가할때, 투자자가 자신이 다른 당사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거나 직접적인 의결권 보유자로서의의사결정권과 대리인으로서의 의사결정권이 독립적이라는 것을보장하는 정책이나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투자자가 대리인으로서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 BC128 ED 10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기준이 대리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적용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IASB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IASB가 제안한 적용지침이 법적 또는 계약적 대리관계에만 한정하려는 의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보상형태가 대리관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

자들은 이 부분에서 적용지침이 혼란스럽다고 느꼈다. 그들은 투자자가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본인으로서의 권리를 합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이중 역할에 대한 지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그들은 그러한 투자자가 지배력 평가에서 대리인으로서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 BC129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IASB는 본인·대리인 지침을 대리 이론에서 개발된 사고에 근거하기로 결정하였다. Jensen과 Meckling (1976) 은 대리관계를 '한 명(본인) 이상이 어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사람(대리인)에 게 위임하는 것을 수반하여 고용하는 계약적 관계'로 정의하였다.10)
- BC130 IASB는, 정의된 것처럼, 대리인은 광범위한 수탁 책임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가 아니라 힘을 위임한 당사자(즉 본인 또는 본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법이나 계약으로 다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지배력 평가의 목적상 대리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실제로 법적 또는 계약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영향 받는 이익의 대부분을 자신이 받는 경우에도 항상 그렇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비록 이 가정이 어떤 의사결정자에게는 적절할 수 있으나, IASB는 모든 경우에 특히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거의 모든 투자나 자산의 관리자는 다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¹⁰⁾ M C Jensen and W H Meckling, '기업이론: 관리 행동 대리 비용과 소유구조(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금융경제학 저널(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76, pp. 305~360

이러한 결론은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거의 모든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BC131 IASB는 대리관계를 다루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힘과 이익의 관계가 종종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투자자는 힘을 보유해야 하며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BC132 의사결정자가 상대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이익이나 유의적이지 않게 변동하는 이익을 수취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당사자가 수취할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수월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자기 자신의 효익을 위한 힘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상당한 투자(예: 95%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을 주로 자신이 수취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자기 자신의 효익을 위한 힘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적이지 않은 것과 매우 유의적인 것 사이의 어떤점에서,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에서 자신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인가?
- BC133 IASB는 IFRS 10에서 지배력을 다룬 지침이 대리관계에 적용되어 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배력을 평가할 때,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수취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지 또는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주로 다른 당사자의 효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BC134 IASB는 다른 당사자가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일방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할 때, 의사결정자가 항상 그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한 당사자가 보유하는 실질적 해임권은 대리관계의 결정적인 지표이다.

BC135 2010년 11월에 연결에 대한 FASB 회의(round-table meeting)에서, 참가자들은 한 당사자가 실질적 해임권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또는 지배기구)가 한 당사자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IASB는 그러한 지배기구의 기능이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투자자의 이사회(또는 다른 의사결정조직)에 주어진 권리는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경과적 기제(a pass-through mechanism)로 보았다. 따라서 지배기구자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거나 제약한다고고려될 수 없다. 오히려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투자자가 그러한지배기구에 부여한 권리이고 그러한 권리가 의사결정 권한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조직을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로보지 않는다.

BC136 한 당사자가 보유하는 실질적 해임권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자가 본인으로서 행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 그 평가는 의사결정자, 관리 받고 있는 기업, 그리고 다른 지분 보유자들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감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BC137 한 당사자가 보유하는 실질적 해임권을 제외하면, 어떤 하나의 요소도 대리관계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IASB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서 특정 요소가 대리관계의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고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요소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질 수 있다고보았다. 그러나 비중은 각 경우의 적절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항상 비중이 크다고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의사결정권의 범위

BC138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 본인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이다. IASB는 의사결정 권한의 폭이 계약상 약정에 의해 제한되면 의사결정자를 항상 대리인으 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그 결론을 기각하였다. 첫째, IASB는 채권자나 비지배지분은 흔히 지 배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방어권을 가지고 있 으므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제약 없는 힘을 보유하는 경 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라는 결론을 자동적으로 이끌어내는 의사결정 제한의 특정 한계점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뿐만 아니라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경제적 이 익을 보유하더라도 증권화 기구와 같은 많은 피투자자를 의사결 정자의 지배를 받는 기업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되는 부적절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IASB는 피투자자가 설립되었을 때 관련 활 동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 다.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

BC139 본인·대리인 분석에서,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한 권리를 고려할 때, IASB는 기업이 그 권리가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의결권과 같은) 다른 권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인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기업은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러한 권리가 보유자에게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실제적 권리를 부여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BC140 일부 관련자들은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청산권(liquidation rights)을 다루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다. IASB는 해임권이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하는 권리'로 정의되며, 일부다른 권리(청산권과 같은)는 의사결정 권한에 대해 해임권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다른 권리가 해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권리들은 명칭(label)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에 이러한 측면에서 더 이상의 지침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BC141 IASB는 실질적인 해임권을 가진 다른 당사자가 없는 경우, 특정수준의 이익을 받거나 이익 변동성에 노출(예를 들면, 피투자자의이익 변동성의 과반에 노출)된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리관계를 결정하는 이익의 특정 수준을 명시하는 모형을 개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오히려 IASB는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에관여함에 따라 이익 변동성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142 이익을 평가하는 양적 접근법을 규정하고 이익의 특정 수준을 명시하면, 필요한 판단의 일부를 제거하여 규정을 더욱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지만, IASB는 그러한 접근이 일부 상황에서 부적절한 연결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특정 회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설계를 조장할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을 만들 것이다. 또한 IASB는 대리관계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가 의결권으로 지배될 때의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게 의사결정자의 이익 변동성에 대한 노출이 힘의 크기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예를 들어, 피투자자의 이익 변동성에 과반 노출되었을 때, 과반 미만으로 노출되었을 때에 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반드시 더 많이 보유하는 것

은 아니다.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 BC143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투자자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의 성격이 그러한 다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고 있다고(그들은 '사실상 대리인'이다)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계약적 대리관계가 생기게 된다. IASB는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누군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그 당사자를 지시할 능력을 보유할 때 그 당사자를 사실상의 대리인이라고 결론지었다.
- BC144 ED 10에는 종종 투자자를 위해 행동하는 당사자들의 예시 목록을 포함하였다. IASB의 의도는 투자자가 그런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당사자가 투자자를 위해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 BC145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종종 투자자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당사자들의 예시 목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사자들을 각각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제출자들은 한 당사자가 투자자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결론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 BC146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 권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또는 권리)을 마치 투자자가 그 권리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와 함께 고려한다고 기술함으로써 IASB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문단 B75에 열거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위해 항상 행동하거나 또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간

관계의 성격이 다른 당사자가 사실상 대리인인 것인지에 대한 평가라면 관계의 성격과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인정하였다.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BC147 ED 10에서 피투자자는 하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일로'(silo)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이는 피투자자와 관련된 법적 그리고 계약적 약정이 한 당사자에게 특정 자산과 부채의 세트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고, 반면 다른 당사자가 피투자자 내의 다른 자산과 부채의 세트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더 많은 지침을 요청하였다.

BC148 그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IFRS 10은 특정 자산의 지분에 대한 적용 규정을 포함한다. 이 지침은 피투자자의 일부가 연결 목적을 위해 별도 기업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US GAAP의 현행 지침과 일관된다. IASB는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의결권이나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제약하는 것은 모든 피투자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배력 모형을 개발하는 목적에 반대(상충)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그러한 제약을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특정 자산의 지분에 대한 지침은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가능하다. 이것은 이 지침을 변동지분기업(variable interest entities)에만 적용하는 US GAAP과 대조적이다.

계속적 평가

BC149 ED 10에서 투자자는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IASB는 지배력의 평가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 실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재고려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재고려 기준을 충족 하는 때에만 지배력을 다시 평가하는 것은 일부 사례에서 적절하 지 않은 연결 결정을 유발할 것이다.

- BC150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계속적인 지배력의 평가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계속적인 지배력의 평가가 각 보고기간 말에 작성자가 지배력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BC151 IASB는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도록 한 ED 10의 제안을 확인하였고,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에 하나 이상의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을 때 지배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한 재평가는 각 보고일 에 한정되지 않으며, 각 보고일의 모든 지배력 또는 잠재적인 지배력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 BC152 2010년 11월에 열린 연결에 관한 FASB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지배력의 재평가(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결정자의 지위 포함)에 대해, 특히 잠재적 의결권의 맥락에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시장 상황(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문단 BC124 참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의 재평가 (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결정권의 지위 포함)를 다루는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시장 상황의 변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결 결정이나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힘이 실질적인 권리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요인뿐만 아니라, 많은 요인을 고

려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자자에게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변동이익의 특정 수준을 노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투자자의 예상 이익의 변동은 연결 결론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BC153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관련 사실과 상황의 변화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변화되거나 본인과 대리인의 전반적인 관계가 변화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확인하였다.

회계규정

연결 절차

BC154 IFRS 10의 적용 규정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다. 문단 B89~B91은 이전에 IAS 27의 실무 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던 지침을 대체하지만 연결절차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비지배지분(2003년 전부 개정과 2008년 개정)

BCZ155 IAS 27에 대한 2008년 개정에서 '소수주주지분(minority interest)' 용어를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으로 변경하였다. 그러한 용어의 변경은 기업의 소수주주지분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의 대주주지분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지배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소유주의 지분을 기술할 때 '소수주주지분'보다 '비지배지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BCZ156 비지배지분은 IAS 27에서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이 정의 는 현재 IFRS 10에 있다)에게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하지

않는 지분으로 정의되었다. IAS 27(2000년 전부 개정) 문단 26은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을 부채와 지배기업(주주)지분과 별도로 연결 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BCZ157 IAS 27에 대한 2003년 전부 개정의 일부로, IASB는 이러한 규정을 수정하여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을 지배기업의 주주지분과는 별도로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 IASB는소수주주(비지배)지분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고결론지었다.11)
- BCZ158 '개념체계'(2001) 문단 49(2)에서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라고 기술하였다. '개념체계'(2001) 문단 60에서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duty) 또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ASB는 종속기업 순자산에 대한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의 존재는 현재의무(결제하게 되면 연결실체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예상되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 BCZ159 대신에, IASB는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내 종속기업의일부 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종속기업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내므로 개념체계(Framework)의 자본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개념체계'(2001)의 문단 49(3)에서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기술하고 있다.

손실의 귀속(2008년 개정)

¹¹⁾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 및 개정 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BCZ160 IAS 27(2003년 전부 개정)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소수주주(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실이 그 종속기업 자본의 소수주주지분을 초과할 때 이러한 초과분과 소수주주에 해당되는 추가 손실은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되,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도록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까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 BCZ161 IASB는 2005년에 이러한 회계처리가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 자본 의 일부라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총포 괄손익을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도록 제안하였다.
- BCZ16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이나 비지배지분에 의무가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IASB는 기업이 그 약정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포괄손 익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는 방식에 그 약정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BCZ163 2005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지배지분이 종속 기업의 위험과 보상을 비례적으로 공유한다는 점과 그 제안이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과 일관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 BCZ164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성격이 달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 27(2003년 전부 개정)의 지침(즉 기업은 초과 손실을 지배지분에 배분한다. 다만 비지배지분에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비지배지분에 결손을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비지배지분이

특별히 부담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종속기업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추가 자본을 요구한다면 비지배지분은 자신의투자를 포기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반하여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상 지배지분이 종속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는 암묵적 의무가 종종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종종 지배기업에 의한 보증이나 그 밖의 지원 약정에 의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손실을 귀속시키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을 초과하는 종속기업의 손실로부터 비지배지분이 보호된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고 보증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손실을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비지배지분이 추가로 투자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오해를 유발할 것이다.
- (3) 보증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소유주 간의 거래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한다.
- (4) 손실을 배분할 때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감독, 계약상 제약, 특히 규제사업(예: 은행과 보험자)을 고려하여야 한다.
- BCZ165 IASB는 이러한 이유를 검토하였으나 비지배지분이 종속기업에 자산을 제공할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기업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과 보상에 비례적으로 참여한다.
- BCZ166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또는 비지배지 분 간의 보증 및 비슷한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그들은 IASB가 기업 간 보증 그리고 비지배지분의 결손 한도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Z167 IASB는 이러한 요구를 검토하였으나, 이것은 부(-)의 비지배지분보다 더 광범위한 회계논제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부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고, 자산을 연결실체 내에서 이동시키는 지배기업의 능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종종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이 연결실체의 자산을 반드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IASB는 비지배지분을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비지배지분의 공시는 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2008년 개정)

- BCZ168 IASB는 지배력을 획득한 후에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이러한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거래의 결과 인식될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BCZ169 IASB는 이 개정안에서 채택한 접근법이 비지배지분은 자본의 별도 항목이라는 이전의 결정과 일관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문단 BCZ156~BCZ159참조).
- BCZ170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지배지분이 자본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지 만, 특별한 종류의 자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주 접근법을 선호하는 반면,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인식하는 것은 IASB가 기업실체접근법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제안된 회계처리가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며, 회계처리를 이렇게 규

정짓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2008년 IAS 27에 대한 개정의 일환으로 기업실체접근법과 소유주접근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는 않았다.

- BCZ171 2005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지배소유지분 변동의 회계처리에 대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안된 대안에 따르면 지배소유지분의 증가는 영업권(취득대가가 종속기업의 별도로 식별된 자산의 장부금액 중 추가 지분 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측정됨)을 추가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 BCZ172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이 감소할 때 지배지분에 귀속될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손익은 받은 대가와 처분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자산(인식된 영업권 포함)의 비례적 장부금액 간 차이로 측정하게 된다. 이 대안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그 방법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지배지분에 귀속될 손익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BCZ173 IASB는 이 대안을 기각하였다.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자산 변동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업결합에서 지배력 획득이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는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서의 IASB 결정과일관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건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모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인이 된다. 소유주와의 후속 거래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는안 된다.
- BCZ174 지배기업은 그 사업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지배지분과 나누어야만 하더라도 이미 그 자산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취득하여 이전의 비지배지분이 갖고 있었던 수익에

대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산이 갖는 부(富)의 창출 능력은 비지배지분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지배기업은 더 많거나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배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다.

- BCZ175 비지배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취득하여 지배기업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후의 기간에 종속기업 손익의 더 많은 부분을 배분받을 것이다. 지배지분에 대한 조정은 인식되지 않은 가치변동을 종속 기업이 인식할 때 지배기업에 배분될 몫과 동일할 것이다. 그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지배지분이 과대계상될 것이다.
- BCZ176 IASB는 자본거래로서 지배소유지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연결 실체의 수익과 보고된 지배지분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검토한 다른 대안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Z17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을 후속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보고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비지배지분을 취득한 기업이 보고하는 레버리지 효과와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대출약정을 재협상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 BCZ178 IASB는 기업지분의 모든 취득은 지배기업의 보통주나 우선주 또는 비지배지분 중 어느 것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비지배지분의 후속 취득에 대한 처리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취득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BCZ179 IASB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자본의 총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기업의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의 명세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공시규정은 현재 IFRS 12에 있다).

지배력의 상실(2008년 개정)

- BCZ180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때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지배력은 소유지분의 매각이나 그밖의 방법(종속기업이 제삼자에게 새로운 소유지분을 발행하는 것등)으로 상실될 수 있다. 또 지배력은 거래가 없어도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를 허용했던 약정이만료되는 경우에도 상실될 수 있다.
- BCZ181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배·종속관계는 중단된다. 지배기업은 더 이 상 종속기업의 개별 자산과 부채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과 관련된 개별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을 제거한다. 자본은 외화환산 등과 같이 이전에 인식한 관련 기타포 괄손익 금액은 물론 비지배지분을 포함한다.
- BCZ182 IASB는 지배력을 상실한 후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보유하는 지분이 개념체계(Framework)상의 수익과 차익(revenue and gain) 인식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이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는 IASB의 관점을 반영한다. 지배·종속관계는 중단되고 이전의 지배·종속관계와는

유의적으로 다른 투자자·피투자자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새로 운 투자자·피투자자 관계는 지배력을 상실하는 날에 최초로 인식 되고 측정된다.

BCZ183 IASB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이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연결실체 개별 자산과 부채의 일부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 그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처분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로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간접 처분시 그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Z184 IASB는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주주에게 이전하면서 지배력을 상실할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보통인적분할(spin-off)이라 한다). IFRIC은 이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사업결합과제가 진행 중에는 그 의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회계논제가 사업결합과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AS 27의 개정에서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의 측정 기준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복수 약정

BCZ185 IASB는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만 처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특정 회계처리 결과를 얻기 위해 거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배지분을 처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익은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나 약정을 복수 단계로 설계할 유인이 있을 것인가? 다음 예시를 검토해보자. 기업 P는 기업 S의 지분 70%를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다. 기업 P는 기업 S에 대한 70%의 지배지분을 모두 처분하고자 한

다. 기업 P는 처음에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고 기업 S에 대한 소유지분 19%를 처분하고 곧이어 남은 51%를 처분하여 지배력을 상실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업 P는 한번의 거래로 기업 S의 지분 70%를 처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지분 19%의 처분은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할 것이며, 반면에 나머지 51% 지분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전체 지분 70% 처분에서 발생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 BCZ186 IASB는 거래를 설계하여 손실을 감추고자 하는 기회는 IAS 36과 IFRS 5의 규정에 따라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36 문단 12는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의 하나로 기업의 자산 사용 방법 또는 사용 계획의 유의적인 변화를 들고 있다.
- BCZ187 자산이 매각예정자산(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의 분류 기준을 충족한다면 IAS 3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FRS 5 문단 20에 따라 '기업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적절할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에 매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될 종속 기업의 영업권과 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이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그 주요 위험은 이익의 최소화이지만, 기업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 BCZ188 IASB는 이러한 거래의 설계 가능성은 기업에 표현의 충실성 원칙이 지켜지도록 복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할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복수 약정을 단일 약정으로 회계처리할지를 결정할 때 약

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하는 복수 약정이 단일 약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IAS 27(2008년 전부 개정) 문단 33에 지표(이러한 지표는 현재 IFRS 10의 문단 B97에 있음)를 포함하였다.

BCZ189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 제시된 지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복수 약정이 단일 약정으로 회계처리되는 때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개초안에서 개발한 회계모형이 개념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침은 소유지분의 감소 회계처리에 대한 다른 대안에서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복수 약정에 대한 지침이 일부 다른 회계처리 대안에서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그러한 모형이 개념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는동의하지 않는다.

BCZ190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27에 복수 거래가 단일 거래나 약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지표보다는 예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그러한 예시는 완전한 열거 목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IASB는 그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지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 지표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약정을 다루기 위하여 끝없는 예시 목록을 제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시행일

BC191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1, IFRS 12, IAS 27 '별도재 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및 IAS 28의 시행일과 맞추 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 있거나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공시 규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다른 4개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IFRS 10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BC192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하면서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많은 국가에서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데 필요한 시간
 - (2) 연결과제가 2007년에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되었고, IASB가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및 그 밖의 관련자들로부터 기업의 '부외(off balance sheet)'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선하라는 긴박한 요청에 대응하여 연결과제의 수행을 가속화한 사실
 - (3)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적용 원가, 시행일 및 경과 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 규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수령한 검토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수의 의견제출자들만이 이러한 기준서들의 시행일을 2011년에 발행되는 다른 기준서들의 시행일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C194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조기 적용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조기 적용이 2011년과 2012년의 최초채택기업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무제표간 비교 가능성이 결여되는 것을 피하고, 문단 BC191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IASB가 5개 기준서 모두에 동일한 시행일을 결정한 그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1, IFRS 12, IAS 27(2011년개정)및 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FRS 10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 기준서를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IFRS 12의 공시규정 중일부라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더잘이해할 수 있다면 기업이 그러한 공시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경과 규정

BC195 IAS 8에서 모든(all)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소급 적용은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BC196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ASB는 IFRS 10으로 인하여 이전에 연결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에 대해 연결하는 투자자나 이전에 연결대상이었던 피투자자에 대해 연결하지 않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투자자가 이전에 연결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고 그 피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례연결이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 온 경우, IFRS 10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소급하여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흔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투자자가 이전에 연결대상이었던 피투자자를 더 이상 연결하지 않고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BC196A IFRS 3은 2004년에 최초로 공표되었고 2008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된다. IASB는 문단 C4~C4A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할 때, 투자자가 IFRS 3(2008년 개정)의 시행일 전에 연결하지 않았고 시행일 전에 지배력을 획득한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될 IFRS 3의 버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IFRS 3의 현행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C196B 그러나, BC196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자가 그러한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비례연결법이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온 경우, IFRS 3(2004년 공표)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가지, 영업권 및 그 밖의 금액은 이미 식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경우에 투자자에게 기존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사후판단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연결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근거를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FRS 3(2008)의 시행일 전에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IASB는 기업들이 경과 규정을 적용할 때 IFRS 3(2008) 이나 IFRS 3(2004)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96C 이와 비슷하게, 2003년에 공표된 IAS 27도 2008년에 전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IAS 27(2008년 개정)의 규정은 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또한 IASB는 IFRS 3과 관련하여 BC196A~BC196B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지배력이 IAS 27(2008)의 시행일 전에 획득된 경우, 기업들이 경과 규정을 적용할 때 IAS 27(2008)이나 IAS 27(2003)의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97 또한 IASB는 IFRS 10의 소급 적용이 일부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IFRS 10을 최초 적용하는 투자자가 이전에 연결 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를 연결하고 IFRS 10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면, 보고기업은 그 규정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시작일을 취득일로 하여 IFRS 3의 취득법을 적용할 것이다(사업이아닌 피투자자에게는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BC198 IFRS 10의 최초 적용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연결하였던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최초 적용일에 투자자가 처음으로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IFRS 10의 규정이 유효했었다면 측정되었을 금액으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보유지분을 측정한다.

IFRS 10에 따르면, 투자자가 전혀 지배력을 획득한 적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처음으로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던 시점부터 종전의 연결을 제거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른 IFRS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그와 달리, 투자자는 IAS 27과 IFRS 10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였지만, 그 후에 IAS 27이 아닌 IFRS 10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IFRS 10의 정의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을 중단할 것이다. 투자자가 처음으로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 (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보유지분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투자자는 IFRS 10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에 지배력 상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IFRS 10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수 있다.

BC199 문단 BC192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2011년에 공표한 IFRS의 경과 규정에 대

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결에 대한 경과 규정과 관련하여, IASB는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IFRS 10의 한정된 소급 적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99A IASB는 IFRS 10의 한정된 소급 적용을 의도했던 경과 규정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10을 공표할 때 주된 의도는 IFRS 10이 최초로 적용될 때(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13년 1월 1일) 거래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IFRS 10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지분을 결정하는 시점으로 최초 적용일을 사용하려는 의도였다. IASB는 또한 그의도가 IFRS 10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연결 여부의 결론이 IAS 27/SIC 12를 적용하든지 IFRS 10을 적용하든지 동일할 경우에는 경과 규정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IFRS 10의 소급 적용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얻을 증분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BC199B 따라서, IASB는 '최초 적용일'은 IFRS 10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차 회계연도의 시작일을 의미한다고 확인하였다. IASB는 최초 적용일에 IAS 27/SIC 12를 적용하든지 IFRS 10을 적용하든지 연결 여부의 결론이 동일한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에 대한 종전 회계처리를 조정하도록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과 규정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IASB는 문단 C3(2)의 경과완화 규정을 IFRS 10의 최초 적용일(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경우 2013년 1월 1일) 전에 처분된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에도 적용할 것을 확인하였다.

IFRS 10의 최초 적용에 관한 비교 정보를 어떻게 소급하여 조정 BC199C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IASB는 모든 비교 정보를 조정하 여 표시하는 것은 여러 기간의 비교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의 작 성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IFRS 10의 인식 과 측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유지하되 최초 적 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여 조정된 비교표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2009~2011년 주기 IFRS 연차 개선 (2012년 5 월 공표)에 의해 개정된 IAS 1 '재무제표 표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의 비교공시 규정과 일관된다. 이 개정으로 기업이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세 개의 재무상태표 (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와 그 밖의 재무제표(IAS 1 문단 40A~40B)를 각각 두 개씩 표시해야 하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한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모든 비교 기간이 다 조정되지는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 사실을 명시하 고, 그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정보가 작성

BC199D 또 IASB는 IAS 8의 공시규정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어떤 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에는, IAS 8 문단 28(6)에 의하면 기업은 영향받는 각 재무제표의 항목별 조정금액을 당기와 각 표시된 이전기간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IFRS 10으로의 전환에 따라 연결여부의 결론이 변경되면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많은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ASB는 이러한 규정이 작성자들에게는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연결 여부의 결론이 변경됨에따른 양적 영향에 대한 공시는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기업은 당기 또는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된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BC199E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FRS 10 경과 규정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IFRS 1을 개정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특히 비교기간 동안에 피투자자를 처분하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일시적인 연결 정보 제공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일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는 IFRS 1의 적용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하며, IFRS 10으로의 전환완화규정을 명확히하는 맥락에서 다루기 보다는 IFRS 1 자체의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경과 규정(2008년 개정)

- BCZ200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FRS의 개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IASB는 2005년 공 개초안에서 소급 적용의 효익이 원가보다 더 크다는 것에 기초하여 IAS 27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공개초안에서 다음 두가지 경우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개정 내용 시행일 전에 발생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 따라서 개정 내용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 (2) 개정 내용 시행일 전에 지배력을 상실한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그러므로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을 지배력 상실일의 공정가치로 조정하지 않는다. 또 개정 내용 시행일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그러한 상실에 따른 어떠한 손익도 재계산하지 않는다.

BCZ201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할 때에 따르는

이행의 어려움과 원가가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라는 효익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IASB는 전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또 IASB는 개정 내용을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없고 따라서 전진 적용이 요구될 이러한 규정을 밝혀두는 것이이행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Z202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유지분의 증가와 감소에 대하여 경과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주로 증가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규정이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의 감소에 대해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정당화될수 없는 규정준수 원가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주장을 받아들여 소유지분의 모든 변동에 전진 적용하여야 한다고결정하였다(이러한 경과 규정은 현재 IFRS 10의 부록 C에 있다). 전부 개정된 경과 규정에 따라 소유지분의 증감이 대칭적으로 처리될 것이고 재무제표의 변경은 공시와 표시에 한정될 것이다. 이전 거래의 인식과 측정은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BCZ203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실무상 우려에 대하여, 비지배지 분이 부(-)의 잔액으로 보고될 수 있더라도 종속기업 자본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을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전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이 경과 규정은 현재 IFRS 10의 부록 C에 있다).

IAS 28(2008년) 및 SIC 12의 대체

BC204 IFRS 10은 지배력의 원칙을 확인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또 IFRS 10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원칙을 확인한다. IFRS 10은 IAS 27(2008년 개정)과 SIC 12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을 대체한다.

BC205 IFRS 10에서는 IAS 27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상의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지않는다.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IAS 27의 일부 사항은 개정된 IAS 27에 포함되어 있다.

ED 10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06 2008년 발행된 공개초안 ED 10과 IFRS 10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12)

- (1) IFRS 10은 다음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적용지침을 포함한다.
 - (개) 지배력의 정의에 포함된 '힘', '활동' 및 '이익'의 의미
 - (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의 이해
 -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다른 활동들
 - 투자자에게 힘을 제공하는 권리와 방어권에 대한 논의
 - · 의결권(잠재적 의결권 포함)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 도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
 - 계약적 그리고 비계약적 대리관계
- (2) IFRS 10은 IAS 8의 실행 가능성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 적용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최초 적용일에 IFRS 3의 규정 또는 이 기준서의 지배력 상실과 관련한 규정을 이용하는 전진 적용을 제안하였다.

원가·효익 고려

^{12) 2012}년 10월에 IASB가 공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문단 BC215~BC317에서 논의된다.

BC207 일반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새로운 IFRS를 실행하기 위한 원가가 공평하게 부담되지 않을 수있겠지만,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 및 신용시장의 기능과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게 된다.

BC208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IASB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1) 재무제표작성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2)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재무제표의 이용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3) 재무제표이용자가 대용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 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작성자가 정보를 마련하는 경우의 비교 우위
- (4)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
- (5) 이용자, 작성자 및 그 밖의 관련자들의 전환비용

BC209 IASB는 IFRS 10이 실무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왔고 다양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연결기준(지배력)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견고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IFRS 10은 피투자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때 일관되게 적용되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새로 정의한다. 또 IFRS 10은 IAS 8의 실행 가능성 면제 (practicability exemptions)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

다.

BC210 이용자들은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 가능하고 특정 기간에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한다. IASB는 IFRS 10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원칙을 제공하고, 지배력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적용 지침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보고기업이 지배하는 활동에 대하여 보다 비교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BC211 IFRS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침이 없다면, 작성자는 종종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감사인을 고용할 것이다. IFRS의 전부 개정에서 규정이 명확해진다면, 이러한 원가는 감소한다. 따라서, IASB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작성자가 효익을얻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IFRS 10은 IAS 27과 SIC 12에 지침이 없다고 IASB에 전달된 우려를 다루기 때문이다. IASB는 신규 IFRS가 작성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배우고 그들의 회계처리를 다시 평가 하는 것과 관련한 일회성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명확한 원칙과 적용지침을제공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그러한 원가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다.

BC212 지배력에 대한 정의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일부 보고기업의 경우이전에 연결하지 않았던 일부 기업을 연결하고 일부 기업의 연결을 중단하게 하거나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게 할 것이다. IASB는 새로운 제안을 적용함으로써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연결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함에 따라 더 많이 연결하게 될 것이다. SIC 12에서 특수목적기업을 언급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IASB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다 적절히 연결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BC213 문단 BC209~BC211에서 언급한 사용자와 작성자의 효익을 고려할 때 IASB는 IFRS 10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생각한다.

BC214 또 이 과제에서는 연결과 관련한 공시 규정을 고려하였다. 그러한 규정들과 관련 원가 및 효익은 IFRS 12의 결론도출근거에서 검토되다.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 (2012년 개정)

배경

BC215 2012년 10월에 IASB가 공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였다. IASB는 ED 10에 대한 검토의 견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기업' 과제를 IFRS 10의 심의과정 중 안건에 추가하였다.

BC216 IASB는 해당 이슈를 과거에도 고려한 적이 있다. 2002년, IAS 27 ED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벤처캐피털투자기구, 사모투자 전문기업, 그리고 이와 비슷한 투자기구의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 예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당시에, IASB는 그러한 예외사 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결의 지배모형을 적용할 때 기업의 유형이나 투자의 유형별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경영진이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이유에 따라 그 투자자산에 대한 연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벤처캐피탈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기업, 그리고 이와 비슷한 투자기구의 지배하에 있는 투자자산을 연결하는 재무제표(이렇게 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정도를 공개)가 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킨다고 결론

지었다.

BC217 ED 10의 제안 범위는 IAS 27의 제안 범위와 동일하였다. 보고기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IAS 27은 지배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을 연결한 투자기업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하여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US GAAP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회계규정은 투자기업에 지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특정산업의 지침을 역사적으로 제공하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이 시세차익, 투자수익(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자산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투자기업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주장하였다.

BC218 나아가,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자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현금흐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용자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자기업은 보통 IFRS의 현행원칙에 따라 연결되는 일부 기업의 지배지분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다른 기업의 비지배지분을 보유한다. 투자기업은 모든 투자자산을 비슷한 목적(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모두)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투자자산을 보고하는 것은 재무제표상에서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 추가하여, 연결된 항목의 일부는 역사적원가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기업의 성과평가를 왜곡하고, 기업의 사업관리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BC219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을 연결할 때, 그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더라면 요구되었을 공정가

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IFRS 7은 인식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만 관련된다. 연결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공시를제공하라는 규정은 없다.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와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투입변수는 이용자에게 투자기업에대한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들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고, 공정가치기준으로 자주거래한다(즉, 투자기업에 대한 그들의 투자자산은 그 기업의 순자산에대한 몫에 근거한다).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순자산에대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은 그 기업의 투자자가 그 순자산중 그들의 몫의 가치를 더욱 쉽게 식별하도록 한다.

BC220 이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투자기업' ED를 2011년 8월에 발표하였다. '투자기업' ED는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에 대한 투자기업의 투자를 IFRS 9(만일 IFRS 9가도입 전이라면, IAS 3913))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14) '투자기업' ED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217~BC219에 나타난 이유로 연결 예외를 폭넓게 지지하였다.

BC221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투자기업' ED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기업의 규정을 공표하기 위해 심의하였다. 투자기업 지침에 대한 IFRS와 US GAAP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문단 BC289~BC291에서 자세히 서술된다.

과제의 범위

¹³⁾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 하다.

^{14) 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대신 IFRS 10 문단 32에 따라 연결하는 종속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하였다(문단 BC240A~BC240I 참조).

- BC222 '투자기업' ED는 투자기업의 연결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제안하였다. '투자기업' ED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그제안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 BC22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투자기업이 자신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과제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현행 IFRS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 (1) IAS 40에서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 (2) 금융자산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될 때, 금융자산을 IFRS 9(또는 IAS 3915))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과제의 범위를 투자기업의 연결 예외사항만 제 공하도록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BC224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연결 예외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보험산업에 속한 의견제출자는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연결 예외로 요청하였다. 그들은 보험투자펀드에서 이익을 수령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현재가치를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를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연결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보험자의 지분을 연결 예외로 제외하는 것은 투자기업의 연결예외를 의도한 '투자기업' 과제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더구나, 추가적인 연결 예외는 그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정의하기 위해 IASB가 추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IASB는 추가적인 연결 예외는 과제의 범위로 고려하지 않았고 의견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제안된 연

¹⁵⁾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결 예외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실무적인 BC225 방편으로 보고된 투자자산의 주당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IASB에 요구하였다. 비슷한 지침이 US GAAP에 존재한다. IASB는 IFRS 13을 심의하면서 실무적인 방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 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IFRS상 투자기업에 대한 특정 회계지침 이 없었으며, 전 세계 각국에서 순자산가치에 대한 계산은 실무적 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IASB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을 위한 공정 가치 측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투자기업' 과제범위에서 벗어난 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연결 예외로 어떤 기업이 적합한지 식 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정의를 개발하였다. 투자기업의 정의는 공정가치 측정에 적합한 기업을 결정하기 위해 실무적 편의로 설 계되지 않았다. 더구나, IASB는 순자산가치를 각 다른 국가에서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 과제의 일부로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순자산가치(NAV)의 실 무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226 IASB는 연결 예외에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연결 예외는 종속기업을 소유한 기업의 유형에 근거한다. IASB는 연결 예외에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였다.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에서,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이 연결보다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종속기업(즉, 각 개별자산)과의 관계와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제안되었던 기업에 기반한 연결 예외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에 기반한 접근법은 관련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에 이용가능한 예외를 만들게 하므로 연결 예외가유의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것은 이 기준서에서 IASB가 개발했던 연결모형에 유의적인 개념변경을 의미한다. 추가적으

로,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로 보고하기에 적합한 고유한 사업모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 업에 기반한 접근방법은 투자기업의 고유한 사업모형을 담아낸다.

BC227 IASB는 투자기업에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가치 정보는 모든 투자기업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그들의 견해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투자기업들간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그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 BC228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에 적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들은 US GAAP의지침(Topic 946 Financial Services-FASB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의 투자기업)을 근거로 하였다.
- BC229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에 '투자기업' ED에 제안된 여섯 가지 기준을 전부 충족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지시적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규정들이 투자기업의 사업모형보다 투자기업의 구조에 부적절하게 중점을 두었고,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덜 지시적인 접근법이 비슷한 사업모형을 가진 기업들의 더욱 일관된 보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BC230 추가적으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 ED의 여섯 가지 기

준은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이 더 적합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투자기업의 개념은 IFRS상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의견제출자들은 지침에 투자기업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정의(단순히 투자기업이 되기 위한 기준보다는)와 연결 예외의 정당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BC231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IASB는 '투자기업' ED에 원 래 제안된 일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의 정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을 연결하지 않는다.16)
- BC232 IASB는 제안된 기준 중 일부는 너무 엄격하고, 일부 구조는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하지만 부적절하게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기술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과 같은 구조가 실무적으로존재하나, 투자기업으로서 여전히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 ED에서는 투자기업에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을 것을요구한다. IASB는 단일 투자자가 있는 일부 연금펀드, 국부펀드 및다른 투자펀드도 투자기업으로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 ED의 적용지침은 엄격한 항목에 대하여너무 많은 예외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BC233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연결 예외에 적합하기 위하여 나머지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IASB는 나머지 기준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신한다고 보았고, 투자기업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기

^{16) 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 정은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대신 IFRS 10 문단 32에 따라 연결하는 종속기 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하였다(문단 BC240A~BC240I 참조).

업을 돕기 위하여 투자기업 지침에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위하여 추가 판단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IASB는 하나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투자기업이 어떻게 투자기업의 정의를 여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결정하였다.

- BC234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일 투자자가 있고 자본소유지분을 발행하지 않는 연금펀드는 단일 투자자산을 일시적으로 보유(예를 들면, 기업의 시작 또는 종료시점에)한다고 해도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수 있다.
- BC235 IASB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연결 예외에 적합한 기업들을 명백히 정의하는 것과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s)의 사용을 피하는 것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접근법은 예외보다는 설명을 제공하는 적용지침과 함께 정의 그 자체에 근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정의

BC236 투자기업의 정의에는 투자기업이 다른 유형의 기업과 구별되는 포괄적인 세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관리용역

BC237 IASB는 투자기업의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는 투자관리용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투자관리용역에 대한 조항이 다른 기업과 투자기업을 구별시킨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의 정의에 투자기업은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고, 그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사업 목적

BC238 IASB는 기업의 활동과 사업 목적은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은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만을 위해 자금을 투자한다고 약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39 '투자기업' ED에는 기업이 제삼자에게 상당한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에 적합하다고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에 동의한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은 제삼자에게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제삼자에 대한 이러한 투자관련용역의 제공은 단순히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연장이며,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용역의 제공은 투자기업의 사업모형 내에 있다고 결론내리고 이 주장에 동의하였다. 기업은 투자관련용역의 제공으로 수수료수익을얻는다고 해도, 그 기업의 유일한 사업 목적은 여전히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기업 자신, 투자자 또는외부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BC240 IASB는 투자기업이 때로 자신의 투자활동을 위해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 용역이 중요하거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해도, 그런 종속기업의 존재가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IASB는 이러한 용역을 투자기업 영업의 연장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종속기업은 연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40A 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신 연결하는 종속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10 문단 32, BC85C, B85E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자체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지배기업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인 경우 문단 32가어떻게 적용되는지를 IASB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BC240B IASB는 투자기업은 그 자체가 투자기업인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 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었더라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치한다(문단 BC272 참조). 이는 '투자기업' 공개초안 및 2014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 연결예외 적용(IFRS 10과 IAS 28 개정안)' 공개초안('연결예외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지지하는 바이기도 하다.

BC240C '연결 예외'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에게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각각을 단일 항목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면 종속기업 각각의 투자와 활동에 관한 정보가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투자는 공정가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밖의 활동은 연결하게 하는 '이원적 모형(dual-model)'

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전에 IASB가 기각하였던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과 유사하다(문단 BC226 참조).

BC240D IASB는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에 일부 잠재적 효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 접근방법은 연결실체 내 각기 다른 수준, 각기다른 유형의 종속기업이 있는 다층 연결실체(multi-layer groups)의 경우에 구조설계 이슈를 방지하는 데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IASB는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지침과 함께 광범위한 원칙 중심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연결 예외를 명확히 하는 과제의 제한된범위 내에서 달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또IASB는 2014년 말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짧은 기한 내에 그러한 접근방법과 관련 지침을 개발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어떤 활동을 연결하여야 하고 어떤 것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연결 예외'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이 제출한 다양한 제안에 일부 근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BC240E IASB는 투자기업의 특정 중속기업을 연결하도록 규정한 IFRS 10 문단 32는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영업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 지배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영업 종속기업에 국한되는 예외사항이라고 보았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까지 적용할의도는 없었다. 투자기업의 정의는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과 그 핵심활동이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 투자하는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제3자에게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고 해서 투자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IASB가 결정할 때, IASB는 투자기업이 핵심 투자활동과 함께 제3자에대한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BC240F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투자활동에 부수적인지를 고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정의에서 투자기업의 목적은 시세차익,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임대 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투자하는 것이기를 요구한다(IFRS 문단 B85B 참조). 결과적으로 제3자로부터의 보수를 대가로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목적인 기업은 투자기업의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목적을 가진다. 이는 그 기업의 주요 활동이 투자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경우 상당한 금액일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 수익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한 핵심 투자활동에서 생길 것이다.

BC240G IASB는 투자기업에게 그 자체가 투자기업인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 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법과 일치한다고 결정하였고, '연결 예외' 공개초안의 제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IFRS 10 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그 대신 IFRS 10 문단 32에 따라 연결하여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만약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문단 31에 따라 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BC240H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주요 활동이 지배기업의 핵심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를 평가한다. 만약 그렇다면, 종속기업의 활동은 지배기업의 핵심 투자활동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아, IFRS 10 문단 32에 따라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IASB는 연결실체내의 지배기업 및 다른 구성원에게 행정, 출납, 급여, 회계 용역과 같이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영업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

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은 IFRS 10 문단 32에 따라 연결될 것이다.

- BC240I IASB는 이러한 결론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연장선에서 활동하는 영업 종속기업만 예외로 하고 투자기업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 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결정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BC241 IASB는 피투자자를 재무적으로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일부 활동에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이 다른 효익을 얻기보다 피투자자의 전체 가치를 극대화(예를 들면, 시세차익의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이런 활동들은 투자기업의 전반적인 활동과 일관되고, 그것이 중요한 별도의 사업활동이나 시세차익 이외의 수익원천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 BC242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특정 회계적인 결과 물을 달성하기 위해 더 큰 기업구조에 끼워 넣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지배기업은 손실을 낼 수 있는 종속기업(예: 전체 연결실체를 위한 연구와 개발활동)에 투자하는 '내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피투자자의 기본활동을 반영하기보다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다루고,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IASB는 투자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은 피투자자에게 특수 관계가 없는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효익을얻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로는 이는 투자기업을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서 구별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만일 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다른 구성원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효익을 피투자자한테 얻으면, 투자자산은 기업이나 그 연결실체 내에 영업이나

전략 능력을 효익으로 받을 것이고,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수 없을 것이다.

BC243 그러나, IASB는 투자자산의 시세차익을 증가시키는 상승 효과의 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기업은 동종 산업, 동일 시장, 동일 지역에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사실 패턴(pattern)은 사모펀드산업에서 일반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일부 IASB 위원들은 투자자산들 간의 거래나 상승 효과를 허용하는 것은 각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킬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에 의해 보고된 자산을 부적절하게 증가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들 간에서 발생하는 상업거래나 상승 효과는, 그존재로 그 투자기업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 이외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출구전략

- BC244 IASB는 영업하는 종속기업을 보유한 지배기업이 때로 그 영업으로 부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속기업을 비한정 기간 보유하고 운영할 것을 계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그 투자자산을, 특히 그 종속기업을, 비한정 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채무투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에 대하여 출구전략을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 BC245 그러나, '투자기업' ED의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으로 적합한 일부 투자펀드는 채무투자의 유의적인 금액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기업은 이런 채무상품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일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그 피투자자에 대한 채무와 지분투자를 모두 보유할 수 있는 경

우가 있다고 이해한다. 채무투자는 펀드의 지분투자의 예상된 기간 보다 짧은 만기일을 가질 수 있고, 만기일까지 보유될 수 있다. 더 욱이, 투자기업은 채무상품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거나 다른 종류 의 변동성이 더욱 큰 투자자산의 보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 기일까지 채무상품을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이 만기일 전에 이 투자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채무투자상품 은 한정된 존속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채무투자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다고 해도, 기업은 투자자산을 비한정 기간 보유하려고 계획하지 않는다.

- BC246 IASB는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채무투자를 포함한)이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야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출구전략이 없더라도 채무투자를 IFRS 9나 IAS 3917)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 BC247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이 비한정 기간 보유할 수 있는 사실상의모든 투자자산(일반적으로 지분투자와 비금융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 기업이 지분투자를 비한정 기간 보유하고, 이로부터 시세차익을 실현할 계획이 없다면,그 기업은 연결 예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지분투자와 비금융투자에 대하여 투자를 회수하는 실질적인 일정을 포함한 잠재적 출구전략을 여전히 식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BC248
 IASB는 기업이 법, 규제, 세무상이나 비슷한 사업상 사유[예를 들면, 차단기업(a 'blocker' entity)이나 운용-공급의 구조 ('master-feeder' structure)¹⁸⁾]로 피투자자와 연관되어 설립되고, 그

¹⁷⁾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 하다.

¹⁸⁾ 자본시장법에서 Master-Feeder Fund를 모자형펀드로, Master Fund를 모펀드로, Feeder Fund를 자펀드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자펀드가 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용어상 혼동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Master Fund를 운용펀드로, Feeder Fund를 공급펀드로 번역하고,

피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 중 이 요소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IASB는 피투자자가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자체의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공정가치 측정

BC249 IFRS 10과 '투자기업' ED를 개발하는 중에, IASB는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들었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경영진과 투자자들 모두 그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의거하여 투자기업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의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공정가치 보고서에 의존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BC250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연결 예외에 대한 근거는 공정가치 정보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포함한 투자기업의 투자자산과 가장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IASB는 기업이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현행 IFRS 요구사항이나 회계정책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IASB는 IAS 28이나 IAS 40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정가치 측정 선택권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유의적이지 않는 금액보다 많은 금융자산을 IFRS 9나 IAS 3919)에 따라 상각후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C251 IASB는 일부 투자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

Master-Feeder Fund를 운용-공급펀드로 번역하였다.

¹⁹⁾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가치변동은 당기손익보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투자기업의 정의 중 공정가치 측정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BC252 IASB는 투자기업으로 구별되는 유의적인 특성은 투자기업의 투자 자들이 공정가치에 주로 관심이 있고 투자기업의 관련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IASB는 이는 일부의 많은 경우에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이 공정가치에 근거하여(예를 들면, 기업의 관련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순자산가치에 근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슷하게, IASB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진도 공정가치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공정가치가 내·외부적으로 그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주요한 측정속성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감독 규정

- BC253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서 감독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FASB가 자신의 ED에서 SEC의 Investment Company Act(1940)에 따라 투자기업으로 규제받는 기업은 US GAAP 재무보고목적상 자동적으로 투자기업으로 고려된다고 제안한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감독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고, 이에 의하면, 투자기업으로 규제받는 모든 기업은 투자기업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 BC254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하였다.
 - (1) 각 국가들의 감독 규정은 한 국가 내에서 비슷한 기업들을 투자기 업으로 적합하게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 감독 규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연결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모집단이 항상 변동될 수 있다.
- (3) 어떤 기업들이 연결 예외에 적합할지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감독 규정을 참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C255 IASB는 투자기업의 여러 '일반적인 특징'을 식별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들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을 나타낼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더라도기업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BC256 IASB는 투자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 (1) 둘 이상의 투자자산(문단 BC257~BC258)
- (2) 둘 이상의 투자자(문단 BC259~BC260)
- (3)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문단 BC261~BC262)
- (4) 소유지분(문단 BC263~BC267)

둘 이상의 투자자산

BC257 '투자기업' ED는 투자기업이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단일 투자자산만을 보유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개별 투자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너무 커서, 단일 투자자산펀드로 설립되거나 일시적으로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투자펀드가 포함되었다.

BC258 IASB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투자기업은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둘 이상의 투자자산에 투자한다고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 기준서의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명된다.

둘 이상의 투자자

- BC259 복수 투자자의 존재는 '투자기업' ED의 규정으로 최초에 제안되었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단일 투자자가 있는 투자펀드의 여러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단일 투자자가 있는 펀드, 정부소유의 투자펀드, 연금과 기부금 소유의 펀드, 그리고 유일한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는, 특수 관계가 없는 단일 투자자에 의해 설립된 펀드가 포함되었다.
- BC260 IASB는 단일 투자자가 있는 투자펀드가 투자기업에 적합하지 않는다. 개념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둘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내 다른 구성원들이 그 투자자산으로부터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이외의 다른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가 아닌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

BC261 '투자기업' ED에서 둘 이상의 투자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일부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은 기업 또는 그 지배

기업(만일, 존재한다면)과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기업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주된 펀드의 투자자산을 반영하는 펀드에 투자기업의 종업원이 투자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별도로 '병행(parallel)'기업이 설립될 수 있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주장에 동의하였고,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나 투자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구성원과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를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BC262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에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고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투자자산으로부터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그 기업이나 그기업의 지배기업(만일, 존재한다면)과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이 기준서에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명된다.

소유지분

BC263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한 권리를 주는 지분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예: 파트너십)형 대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 이 특성은 공정가치가 투자기업 투자자들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 투자기업에 대한 각 소유단위는 그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준다. 각 소유지분의 가치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BC264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기업의 소유지분 형태는 기업이 투자기업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견제출자들은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형태의 소유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들의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몫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업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단일의 직접 투자자가 있는 연금펀드나 국부펀드는 투자펀드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수혜자가 있지만, 소유 단위는 없다. 추가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몫에 대한 차별된 등급이 있는 펀드나 투자자가 개별자산에 투자할 선택권이 있는 펀드는 각 투자자에게 순자산의 비례적인 몫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BC265 IASB는 투자자에게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과 이자만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기업 성과의 상·하향에 노출된 투자자들에게 더욱목적적합하다.
- BC266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제안하는 규정(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은 투자자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몫의 권리를 준다)은 투자기업 지위에서 특정 구조를 부적절하게 제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대안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을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형태로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2의 부채/자본 분류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고, 부채로 분류된 소유지분의 일부 구조를 부적절하게 제외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욱이,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로 소유지분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사업모형을 강조하는 것보다 기업의 형태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 BC267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로 소유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로 결정하였다.

지위의 재평가와 변동

- BC268 IASB는 투자기업의 지위를 다시 평가하는 지침을 '투자기업' ED에 포함하였다.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 BC269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사실과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기업이 그 투자기업의 지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이 규정이 IFRS 10의 일반적인 재평가 규정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에 있는 재평가 규정과 일관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른 환경에서의 사실과 상황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작성자나 그들의 감사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 BC270 IASB는 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할 때, 그 변동에 대하여 간주취득처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얻기 위해 '간주' 이전대가처럼 지위의 변동일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IFRS 3에서 기술한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사업결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위의 변동을 인식한다. 이 결과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인식될 것이다.
- BC271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이 될 때 지위의 변동에 대하여 종속기업의 '간주처분'이나 지배력 상실처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FRS 10의 지침 적용시, 지위의 변동일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수령한 대가처럼 사용되어야 한다. IASB는 '간주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당기손익에 차익과 차손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투자자의 사업 목적의 변경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보며, 지배력을 상실할 때 IFRS 10에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근거와 일관된다.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

- '투자기업' ED에서, 투자기업은 피투자자가 투자기업일지라도 모든 BC272 종속기업(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일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예를 들면, 법, 세법, 또는 규제 목적으로 설립된 완전 소유 종속기업인 투자기업) 은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투자기업 인 종속기업(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에 대 한 공정가치 측정은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 법, 세무, 감 독 목적 때문에 설립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만을 연결하도록 요구 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서로 다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구별하 는 개념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특정 법, 세법이나 감독 목적 때문에 설립된 투자기업인 종 속기업과 다른 사업상의 이유만을 위해 설립된 종속기업을 구별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 BC273 IASB는 특정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첨부하도록 요구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예를 들면, 운용-공급펀드(master-feeder funds)]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기초투자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BC274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인 지

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요구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어떤 유형의 구조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이런 규정이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에 언제나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제안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 BC275 IASB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상 투자기업 회계처리를 유지할지를 고려하였다.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투자기업인 종 속기업의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요 구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투자기업에 이용가능한 연결 예외가 그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 BC276 IASB는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수준에서 연결보다 공정가치 정보가 더 목적적합하다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수준에서도 더 목적적합한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277 IASB는 수령한 의견들을 인지하였으나 모든 비투자기업인 지배기 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BC278 IASB는 투자기업의 특유한 사업모형 때문에 연결 예외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비투자기업은 이러한 특유한 사업모형을 가지지 않으며, 투자 외에 다른 중요한 활동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의 모든 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에 대한 주장은 비투자기업 수준에서 약해진다.
- BC279 IASB는 투자기업에 다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투

자기업을 정의하고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기로 한 결정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의 모집단을 증가시켰으며, 기업이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의 양도 또한 증가시켰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단일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나 매일매일 관리용역이나 전략자문을 그 종속기업에 제공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상 투자기업에 적합하지만, '투자기업' ED에 따르면 투자기업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 BC280 IASB는 이런 변동의 일부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투자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것으로 다른 회계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예를 들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차입금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활동을 숨기기 위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종속기업을 보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281 또한, IASB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과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같은 투자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자본에 투자한 종속기업을 보유할 때, 연결 예외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였다.
- BC282 IASB는 비투자기업 수준에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것이 US GAAP상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US GAAP에는 다수의 산업을 위한 산업별 세부지침이 있고, 지배기업이 그 산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그 산업별 세부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된다. IFRS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산업별 세부지침을 포함하지 않는다.
- BC283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자무제표에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유지하

지 않는 것이 IAS 28과 일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IAS 28은 벤처캐피털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비슷한 기업을 통해 관계기업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배기업에 IFRS 9나 IAS 3920)에 따라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 익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IASB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현재 벤처캐피털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비슷한 기업들에 허용되는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ASB는 또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지분법 사용과 공정가치 측정과의 차이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의 차이보다 작다고 보았다.

경과 규정

BC284 IASB는 '투자기업' ED에 연결 예외는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급 적용이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투자기업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정보가 있을 것으로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소급 적용이 IFRS 10의 다른경과 규정과 일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C285 IASB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과 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연결 예외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

- (1)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완화
- (2) 투자기업이 최초 적용일 이전에 투자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완화
- (3) 최초 적용일 이전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 제공에 대한 완화

²⁰⁾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 한다.

BC286 IASB는 또한 이런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는 기업은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인 IFRS 13을 도입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IFRS 13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과거 보고되었던 공정가치 금액(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그투자자산과 교환되었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과거에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사후판단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경우에, 경과 규정 완화를이용할 수 있다.

BC287 또한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특정한 경과 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²¹)

BC287A IASB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기업은 IAS 8에 따라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ASB는 이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일의 직전회계연도('직전 기간')에 대해 IAS 8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양적정보만을 표시하면 된다고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조기 적용

BC288 IASB는 투자기업의 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규정이 연결 예외를 제공하기 때문에, IFRS 10의 개정된 연결규정의 시행일(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투자기업 규정이 공표되어, IASB는 2013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할 경우 공표

^{21)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IFRS 1 문단 BC99 참조).

일과 시행일 간에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규정에 대해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많은 기업들이 규정을 조기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았다. 종속기업에 대한 일부 투자자산은 IAS 27과 SIC 12에 따라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연결 예외를 제외하고, IFRS 10에 따라 연결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ASB는 한 회계연도에는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다음 연도에는 동일한 피투자자를 공정가치로 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잠재적으로 혼란스럽고, 투자기업에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은 적용을 위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결 예외는 투자기업 산업으로부터 오랜 기간 요청되어 왔다. 따라서, IASB는 많은 투자기업이 규정을 조기에도입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보았다.

FASB와의 공동 심의

- BC289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이 과제를 심의하였다. US GAAP은 오랫동안 투자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지침을 가지고 있었다(Topic 946 Investment Companies에 포함). 이 과제를 공동으로 심의하면서, IASB와 FASB는 가능한 비슷한 지침을 얻기를 희망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비슷한 정의와 투자기업 지위에 대한 비슷한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 BC290 그러나, 과제에 대한 범위는 IASB와 FASB간에 차이가 있었다. IASB의 '투자기업' 과제는 연결과제 심의 중에 시작하였고, 투자기업을 위한 연결 예외를 제공할 의도였었다. FASB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미 포괄적인 회계와 보고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IASB와 투자기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정합하려고 하였다.
- BC291 IASB와 FASB는 여러 공통의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범위의 차이와

다른 국가별 차이의 결과로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다.

- (1)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러한 활동을 식별하기보다는 투자기업이 사실상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 투자기업의 정의에 현행 감독 규정에 대한 참조가 있어야 하는 지 여부
- (3) 투자기업에 자신의 투자자 외의 제삼자에게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 (4)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 (5)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투자기업의 영향 분석

- BC292 IASB는 제안된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원가 및 각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와 효익(원가와 효익은 '영향'으로 통합하여 언급된다)에 대한 사실을 평가하고 공유할 것을 확약하여 왔다. IASB는 IFRS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공식적인 제안 공개, 분석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자문으로 그러한 제안에 대한 가능성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 BC293 IFRS 10의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도입에 따른 가능성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IASB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 왔다.
 - (1) IFRS 10에 대한 변경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2) 그러한 변경이 투자기업의 서로 다른 보고기간과 특정보고기간 에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어떻게 향 상시키는지
 - (3) 그러한 변경이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한 재무정보의 질과 투자기

업의 미래현금흐름 측정과 관련한 유용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 인지

- (4)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용자가 어떻 게 효익을 얻는지
- (5) 최초 적용시점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성자들의 규정 준수원 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 (6)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석원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BC294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가 공표되기 전에, IFRS 10(종전 IAS 27) 은 보고기업에 보고기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지배되는 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연결실체를 대표하기 위해 각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등에 통합되었다.

BC295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이 기준서상 현행 원칙에 따라 연결되는 종속기업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일부 기업의 비지배투자자산을 보통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은 투자기업이 모든 투자자산을 비슷한 목적(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을 위해 보유하기때문에 재무제표상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항목의 일부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될 수 있고, 이것은 투자기업의성과평가를 왜곡하고, 그 기업의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을 반영하지않는다.

BC296 연결 예외는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고하는 방법을 변경시킬 것이다.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종속기업을 IFRS 9(IFRS 9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면, IAS 3922))에 따

²²⁾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

라 단일 투자자산처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하다.

BC297 따라서, 연결 예외는 투자자산으로서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투자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그 변경이 중요하더라도, 그 변경은 좁은 범위의 기업들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이 변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BC298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은 다음과 같다.

- (1)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펀드 이들은 기업의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거나, 채무 및 자본투자를 통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더 효익이 되는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다.
- (2)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가진 운용-공급(master-feeder)이나 모태펀드(fund-of-funds) 구조
- BC299 일부 연금펀드와 국부펀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 BC300 다른 유형의 기업들은 뮤추얼펀드 그리고 그 밖의 규제 투자펀드와 같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다. 그들은 그 대신에,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에 대한 더 낮은 수준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연결 예외가 이런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비교 가능성

한다.

BC301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배력은 보고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다. 연결 예외가 없다면, 투자기업은 어떤 한 기간에 투자자산을 연결하고 다음 기간에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또는 반대의 경우도가능). 이것은 보고 기간간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연결예외를 도입하여, 투자기업은 투자자산을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할 수 있다. 이는 보고기간간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BC302 ED 10과 '투자기업' ED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US GAAP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회계규정은 역사적으로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투자기업에 요구하는 특정산업 에 특화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 자들의 일부는 투자기업이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IFRS보다 각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IFRS를 따르는 투자기업 중 일 부는 그들의 모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였 다.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은 저해되었다. IASB는 연결 예외의 도입이 투자기업들의 IFRS 채택을 장려하고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 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미래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유용성

BC303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재무상 태, 영업결과 및 현금흐름을 강조한다. 연결 예외는 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은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에 관련된 목적적합한 현금흐름은 투자기업 자체의 현금흐름이다.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연결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IASB는 이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의해 보고되는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투자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 BC304 투자기업의 필수적인 특징 중 하나는 더 나은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진의 이러한 방법을 반영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요구는 경영진이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 BC305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그들의 몫의 가치를 쉽게 식별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더 많은 공정가치 정보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의적인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BC306 그러나, 일부 국가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10에서 사용하는 연결에 대한 지배력기준 모형을 약화시키므로 연결 예외사항에 반대하였다. 이런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종속기업의 활동과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간 관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사용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연결을 피하기 위해 구조화를 장려할 수 있 고,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우려하였다.

BC307 IASB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지만 투자기업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는 그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라는 이용자들로부터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 예외가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용자들은 또한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자의 재무상 태, 영업결과 및 현금흐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재무상 태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BC308 이런 개정을 마련하면서, IASB는 의도적으로 연결 예외에 적합한 기업의 모집단을 제한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구조화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공정가치 정보가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발생하는 정보보다 목적적합한 상황에 대한 예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의한 연결 예외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작성자들의 규정준수원가에 대한 영향

BC309 IASB는 연결 예외 도입으로 특히 지속적으로 작성자에게 상당한 규정준수원가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투자기업' ED에 대해 의견제출자들로부터 IASB가 받은 의견과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과의 대화에 근거한 것이다.

BC310 최초 적용시, 도입된 추가 공시의 일부를 식별하고 문서화하면서 일부 원가가 발생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은 IFRS 7, IFRS 13의 일 반적인 공시규정과 IFRS 12의 개정된 규정을 따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대다수의 투자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미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미선택하였기 때문이다. IASB는 이것이 연결 예외를 적용하는 최초시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가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 BC311 IASB는 결정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원가를 고려하였고, 결정의 결과로 생산된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보다 크다고 보았다. 또한, 최초 적용 원가는 종속기업을 연결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의 세부사항을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집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상계되는 것보다 클 것이다.
- BC312 문단 BC275~BC283에서 기술한 것처럼,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허용하기 위해과제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개정 내용 준수에 따른 원가절감은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이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 개정사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결실체 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의 회계처리 때문에 지속적인 원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수준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수준에서 그 종속기업은 연결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분석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 BC313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대하여, 이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개정이므로 향상된 보고에 따른 효익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익의 규모는 기존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BC314 일반적으로, 이 개정사항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공정가치가 측

정되는 방법에 대한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분석원가를 줄일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투자기업은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미 공정가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그 변경의 주된 효익이 작성자의 원가 절감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작성자들이 거의 가치가 없는 번거로운 보고규정으로 보던 것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 BC315 서로 다른 국가의 투자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분석가나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회계모형의 다양성에 따른 현행 문제점들은, 표준화된 회계규정으로 감소될 수 있는 원가를 발생시키다.
- BC316 추가하여, IASB는 소급적으로 연결 예외를 적용하는 규정이 이용자의 경과원가의 일부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경과완화규정의 일부는 경과기간 중 이용자가 정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이 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받았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IASB는다시 한번 효익이 이 개정사항의 이행으로 발생할 원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요약

BC317 요약하자면, 이 개정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원가절감은 투자기업과 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 개정사항의 이행은 기업간 그리고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정보를 보다 목적 적합하게 보고하는 효익을 가져올 것이다.

IFRS 10에 대한 소수의견

IAS 27(2003년 전부 개정)에 대한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 의견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DO1 Yamada 위원은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소수주주지분의 자본으로의 분류변경은 개선과제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반대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Z158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수주주지분이 개념체계 (Framework)²³⁾의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채나 지배기업주 주지분과 별도로 소수주주지분을 표시하는 현재 규정이 바람직하 지 않다는 것에 Yamada위원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금 단계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Yamada위원은 현 행 연결 실무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분류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이러한 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IASB가 광 범위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점에는 연결재무 제표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문단 BC2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IASB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Yamada위원은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하기 전에 소수주주지분의 계정분류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24)

DO2 전통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러한 목적은 지배기업의 관점과 경제적 실체의 관점에 함축되

²³⁾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²⁴⁾ IAS 27(2003년 전부 개정) 문단 BC27은 2008년에 IAS 27에 대한 개정의 일부로 삭제되었다. 그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이 소수주주지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제안된 표시가 현행 기준 및 Framework와 일관되고 연결대차대조표에서 부채 또는 지배기업주주지분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인식과 측정의 문제들은 사업결합에 대한 과제의 일환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어 있다. Yamada 위원은 IAS 27 소수주주지분의 분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한 목적(즉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Yamada 위원은 IASB가 이러한 근본적인 논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제적 실체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DO3

단계적 취득이 사업결합과제 제2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업 결합과제는 개선과제에 속하는 IAS 27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완 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IASB는 지배기업이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대가와 지배기업이 취득 한 지분의 장부가치의 차이를 자본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잠정적으 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변동을 영업권금액에서 조정하는 현 행 실무와는 다르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지배력을 유지하지만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지배기업이 받은 대가와 이전된 소유 지분의 장부가치의 차이 또한 자본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현행 실 무가 차익이나 차손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 Yamada 위원은 이 논의의 결과가 소수주주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의사결정에 의하여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회계처리의 변경은 근본 적인 것이고, 연결재무제표를 결정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의사 결정은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세심하게 고려한 후에 이루 어져야 한다고 Yamada 위원은 생각한다. Yamada 위원은 소수주 주지분의 분류와 관련된 IAS 27의 개정이 사업결합과제 제2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8년 1월에 공표된 IAS 27 개정 내용 중 비지배지분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Philippe Danjou, Jan Engstrom, Robert P Garnett, Gilbert Gelard 및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 의견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DO1 IAS 27의 2008년 개정 내용에 대한 Danjou, Engstrom, Garnett, Gelard 및 Yamada 위원의 반대의견이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 DO2 Danjou, Engstrom, Gelard 및 Yamada 위원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전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DO3 이 위원들은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위한 지급 대가는 다음의 추가 지분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1) 취득일의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 (2)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
 - (3)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 순자산(영업권 포함)의 공정가치 증가
- DO4 이 기준서 문단 23과 B96은 이러한 거래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상대적 지분을 조정하여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과 종속기업 순자산에 인식되지 않은 공정가치 증가분은 자본에서 차감된다. 이 위원들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거래의 경제적 측면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DO5 이 위원들은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증가는 지배기업에 효

익을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배력을 이미 획득하였더라도 소유지분율이 더 커지면 지배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재량권이 지배기업에 추가되는 경우이다. 추가소유지분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사이의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 이러한 추가 효익은 추가 소유지분의 매수가격에 반영된다. 이 위원들은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을 취득하면 이전대가가 취득한 추가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영업권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위원들은 이 금액에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의 인식되지 않은 공정가치 증가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가-효익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이위원들은 이것이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의 상당히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한다.

DO6 Danjou, Gelard 및 Yamada 위원은 개념체계(Framework)25)에 따라비지배지분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실체내의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위원들은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즉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과 보고기업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개념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간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배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의 보통주 지분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없다.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의 보유자들은 연결실체의 영업과 순자산에 관련된 동일한 위험과 보상을 나누지 않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만 나누기 때문이다.

²⁵⁾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DO7 또 Danjou 위원과 Gelard 위원은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서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닌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한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FRS 3(2008년 전부 개정)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07에서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이 대안에 따른 측정보다 개념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지배력을 획득한 날에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영업권 부분이 그 날의 자산이고, 후속적으로 비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에 더 이상 자산이 아닐 개념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DO8 Garnett 위원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후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변동에 대한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결론도출근거BCZ168~BCZ179 참조). 지배기업 소유주를 위하여 그러한 변동결과를 재무제표에 명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DO9 Garnett 위원은 IAS 27의 개정이 연결실체내의 모든 자본을 동질 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실체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단순히 총 자본내의 거래로 보고 이러한 거래에서 인식되는 손익은 없다. Garnett 위원은 지배지분이 전체 연결실체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비지배지분은 특정 종속기업에 한정된 지분 청구권을 표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제표에는 기업실체접근법에서 제공하는더 넓은 관점뿐만 아니라 지배관점(지배기업 관점)에서 성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매수에따른 추가 영업권을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DO10 만약 Garnett 위원이 선호한 것처럼 '전부영업권'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면(IFRS 3 소수의견 문단 DO7~DO10 참조), 종속기업 지분

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전대가가 취득한 추가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추가 매수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DO11 Garnett 위원은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소유지분의 일부 처분에 관한 이 기준서 문단 96의 규정, 즉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지분 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비지배지분을 추가로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에 의해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DO12 또 Garnett 위원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매수한 영업권 포함) 장부금액 중 처분에 귀속되는 비례적 몫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종속기업에 대해 보유하는 지분의 일부 처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배력의 상실

DO13 Garnett 위원은 이 기준서 문단 98의 규정 즉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보유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유한 투자자산은 교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은 연결에서 제거하는 정당한 근거가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다. 그러나 보유한 투자자산은 매각되지 않았다. 현행 IFRS에 따라 원가법, 매도가능항목 및 지분법투자자산에 대한 손익은 그 투자자산이 매각(손상 제외)되었을 때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Garnett 위원에 따르면 보유한 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의 영향은 당기손익 대신에 기타포괄손익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실의 회계처리

- DO14 Danjou 위원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손실을 제한없이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이 기준서 문단 B94에 동의하지 않는다.
- DO15 많은 상황에서, 종속기업의 손실 초과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지 배지분이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없는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 자본 출자로 비지배지분을 희석화하면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단 B94의 개정에 의하여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킬 부(-)의 잔액은 연결실체의 자본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 DO16 그러므로 Danjou 위원은 문단 DO15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사실과 상황이 있을 경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을 지배기업 자본에 배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생각한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0호(IFRS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0호(IFRS 10)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을 밝히기 위하여 문단 한3.1을 추가하였다. 이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접두어 '한'을 붙여구분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0호(IFRS 10)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IFRS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따르면 동시에 IFRS 10을 따르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개요

개관

- IN1 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작성하는 원칙을 정한다.
- IN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한다.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IASB에서 기준서를 발행한 이유

- IN3 IASB는 IAS 27과 SIC 12를 적용하는 경우의 실무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하여 연결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보고기업이다른 기업을 지배하지만 그 기업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는 못하였거나 대리관계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지배력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마다 서로 달랐다.
- IN4 또한 IAS 27과 SIC 12의 강조점이 서로 달라 지배력 개념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IAS 27에서는 보고기업이 지배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특수목적기업이라는 맥락에서 IAS 27의 규정을 해석하는 SIC 12에서는 위험과 보상을 더 강조하였다.
- IN5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투자자가 설립하거나 후원한 경우를 포함한 '부외기구(off balance sheet vehicles)'(예: 증권화 기구)에 투자자가 관여하여 노출되는 위험의 투명성 부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그 밖의 관련자들은 IASB에 그러한 '부외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 규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6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기업은 제한된 면제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IN7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력의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하는 기업들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지배력을 규정한다. 그리고이 기준서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IN7A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7호의 개정)에서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해당 개정 내용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또 해당 개정 내용에서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 규정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한다.

IN8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지배력 원칙은 다음 세 가지 지배력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 IN9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지배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1)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는 못하고 잠재적 의결 권이 연관된 상황을 포함하여,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경우
 - (2) 의결권이 관리업무에만 관계되고 계약상 약정에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누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 가장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피투자자를 설계한 경우
 - (3) 대리관계와 관련된 경우
 - (4)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 IN10 이 기준서에서는 사실과 상황이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 IN1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보고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와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연결실체 내부의 잔액과 거래는 제거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 IN12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공시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정하고 있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5. 5. 8. 개정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8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pplying the Consolidation Exception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8)
<u>2014. 12. 19. 개정</u>	번역개선	-
2013. 2. 22. 개정	'투자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7)
2012. 10. 19. 개정	경과 규정 지침;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Transition Guidance; Amendments to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2011. 11. 18. 제정	연결재무제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Amendments to References
2018. 11. 14.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to the Conceptual Framework
	개정	in IFRS Standards
2017. 2. 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mprovements to IFRSs
	2014-2016 연차개선	2014-2016 Cycle
2015. 9.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IFRS 9 Financial
	금융상품	Instruments

개정 주요 내용

○ 2012년 10월 개정

- 1. 최초 적용일의 의미를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2012년 개정)에서는 최초 적용일이란 이 기준 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 였다.
- 2. 연결 범위의 변동이 없을 경우 소급 적용 면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2012년 개정)에서는 비교기간(직전 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하여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연결범위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및 제2012호)의 연결범위가 동일해진 경우에도 소급 적용 면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3. 연결 범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소급 조정을 직전 기간까지로 한정(소급 적용 부담의 완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2012년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의 연결범위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연결 범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비교기간에 대한 정보의 소급 조정을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즉, 직전 기간)까지로 한정하였다.

4. 그 밖의 사항

- 이 기준서 문단 C4B와 C4C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조기채택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08년 개정)를 조기 적용하지 않은 기업에 적용된다.
 -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 시작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 부터 2009년 6월 30일 이전 기간에 있는 기업